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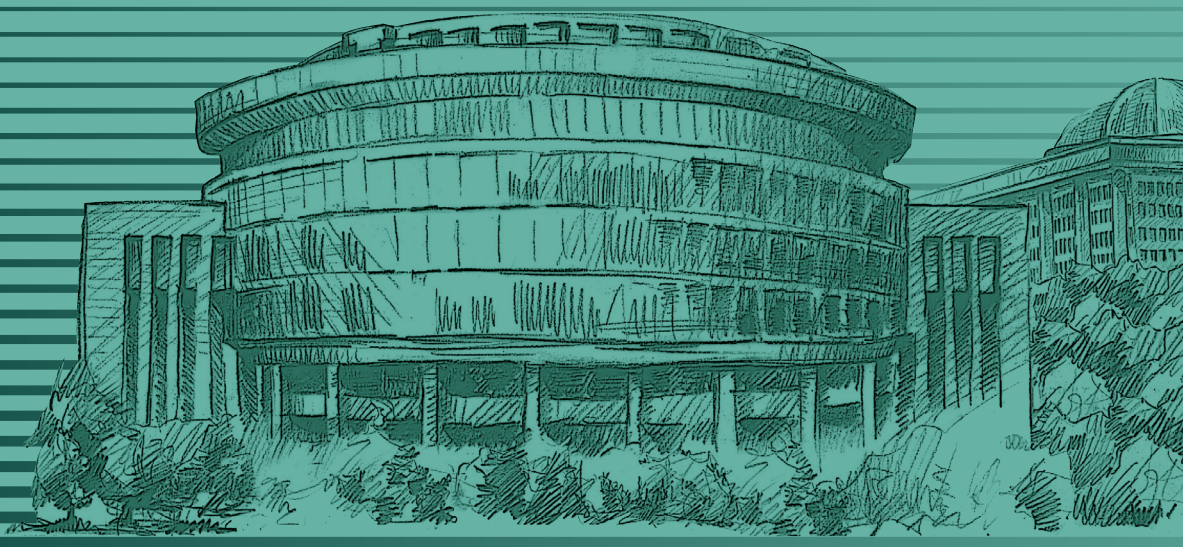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송병철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신은호 산업예산분석과장
박세용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정석배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최성민 예산분석관
정현하 예산분석관
김소연 예산분석관
심성택 예산분석관

지 원 | 이정아 행정실무원
김여진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6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Ⅱ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2021. 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1.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548.8조원, 총지출 604.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국판 뉴딜 2.0으로의 전환,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와 탄소 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등 미래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신 양극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 희망 사다리 패키지를 추진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총지출을 전년 본예산 대비 46.4조원(8.3%)을 증액하는 한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적으로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계획하고 있어, 2022년 국가채무는 1,068.3조원으로 GDP 대비 50.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지속됨에 따라 개별 사업의 효과와 함께 전략적 재원 배분,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할 국회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분석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사업,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탄소중립경제 사업,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안을 각 공공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 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익 상

차 례

CONTENTS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Ⅰ. 예산안 개요 / 3

1. 현 황 ····· 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6

Ⅱ. 개별 사업 분석 / 7

1. 기본경비 사업의 임차료 예산의 적정한 편성 필요 ····· 7

[대통령경호처]

Ⅰ. 예산안 개요 / 13

1. 현 황 ····· 1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5

Ⅱ. 개별 사업 분석 / 16

1. 기동훈련장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16

CONTENTS

[국회]

Ⅰ. 예산안 개요 / 23

1. 현 황 ····· 2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25

Ⅱ. 개별 사업 분석 / 26

1. 직원 주택임차보증금 및 주택보조비는 기본경비에 편성 검토 필요 ····· 26
2. 국회부산도서관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9
3. 국회게시판 디지털화 추진에 따른 시설물 보호대책 마련 필요 ····· 31

[국가인권위원회]

Ⅰ. 예산안 개요 / 35

1. 현 황 ····· 3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36
3. 주요 증액사업 ····· 37

Ⅱ. 개별 사업 분석 / 38

1.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방법 보완방안 검토 필요 ····· 38

CONTENTS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Ⅰ. 예산안 개요 / 45

1. 현 황 ····· 4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5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52

Ⅱ. 주요 현안 분석 / 54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의 문제점 ····· 54
   - 1-1. 토지대여료, 기타잡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세입예산 조정 필요 ····· 55
   - 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사용에 따른 사용료(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예산편성 및 징수·수납 필요 ····· 57
2. 검찰활동 프로그램 예산편성의 문제점 ····· 60
   - 2-1. 개정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후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등 ····· 61
   - 2-2.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법적 근거 없는 포상금 편성 문제 등 ····· 70
   - 2-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아 · 태사이버범죄 개도국 허브 사업 관련 국외업무여비 효율적 집행계획 수립 필요 ····· 74
3.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예산안 편성 간 연계 강화 필요 ····· 79

CONTENTS

Ⅲ. 개별사업 분석 / 87

1. 코로나19 영향 및 사용횟수 감소에 따른 외부 회의장 임차 필요성 재검토 필요 ····· 87
2. ‘청년법조인 해외진출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92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을 인권활동 프로그램의 법률구조 사업에서 법무활동 프로그램의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96
4. 생활법률지식서비스 「버비」: 법교육 목적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차별화 방안 모색 필요 ····· 100
5. 형사조정제도 성립률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107
6.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근거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111
7. 본부인건비(총액): 공익법무관 신규 편입인원 확보를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 강화 필요 ····· 117

[법제처]

Ⅰ. 예산안 개요 / 123

1. 현 황 ····· 12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2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25

CONTENTS

Ⅱ. 개별 사업 분석 / 126

1.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국민 만족도 조사 후 개발대상 법령 확대 검토 필요 ····· 126
2.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인공지능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 마련 필요 ····· 1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Ⅰ. 예산안 개요 / 141

1. 현 황 ····· 14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4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43

Ⅱ. 개별 사업 분석 / 144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과지표 재설정 검토 필요 ····· 144
2. 형사보상금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등 ····· 150
3. 자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및 디지털증거 보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157

CONTENTS

[감사원]

Ⅰ. 예산안 개요 / 165

1. 현 황 ····· 16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6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67

Ⅱ. 개별 사업 분석 / 168

1. 모범공직자 인센티브 변경 검토 필요 ····· 168

[대법원]

Ⅰ. 예산안 개요 / 173

1. 현 황 ····· 17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7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78

Ⅱ. 주요 현안 분석 / 180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 관련 분석 ····· 180
   - 1-1.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적극 추진 필요 ····· 182
   - 1-2.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정비 필요 ····· 186

CONTENTS

Ⅲ. 개별 사업 분석 / 191

1. 법관 등 트라우마 치유 사업 ····· 191
2.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의 적극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 196

[헌법재판소]

Ⅰ. 예산안 개요 / 203

1. 현 황 ····· 20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0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205

Ⅱ. 개별 사업 분석 / 206

1. 헌법재판소 소관 심판사건 처리지연 해소를 위한 인력운영 조정 검토 필요 ····· 206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1억 9,8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500만원(△18.5%) 감소하였다.

[2022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63	243	243	198	△45	△18.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961억 3,0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4억 7,700만원(△1.5%) 감소하였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0)

[2022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1,934	97,607	97,607	96,130	△1,477	△1.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한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2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전년과 유사하게 편성되었고(2021년 632억원 → 2022년 640억원), ② 특수활동비 등 절감으로 주요 사업비는 감액되었다(2021년 344억원 → 2022년 321억원).

2022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경비 사업의 임차료는 최근 연례적인 예산 전용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2022년도 신규사업 및 2021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기본경비 사업의 임차료 예산의 적정한 편성 필요

가. 현 황

기본경비 사업[1)]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600만원이 증액된 20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에는 각종 차량, 장비, 건물 등의 임차를 위한 임차료(210-07)가 전년과 동일하게 9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2년도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본경비	18,782	20,260	20,260	20,666	406	2.0
임차료(210-07)	650	935	935	935	-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나. 분석의견

기본경비 사업의 임차료는 최근 연례적인 예산 전용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경비 사업의 임차료는 2018년도 4억 2,900만원, 2019년도 6억 2,600만원, 2020년도 8억 700만원,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각각 9억 3,500만원이 편성되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011-200

어, 2018년 대비 2022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2018년도에는 7,500만원, 2019년도 4,300만원, 2020년도 1억 1,400만원의 예산이 이·전용 및 세부조정 되었다.

[임차료(210-07) 과목의 최근 5년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2016년	162	-	162	135
2017년	220	-	220	191
2018년	429	△75	354	351
2019년	626	△43	583	583
2020년	807	△114	693	650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해당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및 2019년의 경우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되었고, 2020년의 경우 직책수행경비(250-02)로 9,000만원이, 관리용역비(210-15) 및 기타운영비(210-16)로 2,400만원이 각각 전용 및 세목조정되었다.

[임차료(210-07) 과목의 최근 3년간 이·전용 상세 현황]

구분	이·전용 등 내역		이·전용 등 사유
2018년	세목조정	7,500만원	일반수용비 부족
2019년	세목조정	4,300만원	일반수용비 부족
2020년	전용	9,000만원	직책수행경비 부족
	세목조정	2,400만원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부족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임차료에 편성된 재원이 이·전용된 원인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단체관람이 중단되어 청와대 관람객 수송 차량의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청와대 관람객 수송 현황을 살펴보면, 청와대 관람객 인원 수는 2019년 24만 9,095명에서 2020년은 3만 3,472명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은 8월까지 총 1,866명을 수송하여 2021년도의 경우에도 청와대 관람객 수송 차량 임차

료를 전액 집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청와대 관람객 수송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8.	2022 (예측치)
인 원	234,953	249,095	33,472	1,866	250,000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상치 못하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임차료의 이·전용 등 사유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설명은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2018년 및 2019년도 역시 매년 이·전용 등 예산이 발생하였다는 점, 2018년부터 매년 이·전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예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집행소요를 체계적으로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의 종결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2년도 청와대 관람객 수송 인원을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예측하고 이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료 과목의 적정한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경호처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2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6.3%) 감소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06	80	80	75	△5	△6.3

주: 1) 추경의 경우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971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1,900만원(4.8%) 증가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0,714	92,687	92,687	97,106	4,419	4.8

주: 1) 추경의 경우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한편,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총수입 · 총지출은 세입 · 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0)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2년도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경호대상자 및 경호작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의 비중이 높으며{주요사업비 310.62억 중 174.35억(56.1%)}, ② 국내유일의 경호경비 및 안전관련 교육시설인 경호안전교육원운영 사업을 증액하였다(2021년 본예산 20.54억원 → 2022년 24.89억원).

2022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토지대여료 수납 대상 토지를 원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동훈련장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대통령경호처의 2022년도 신규사업 및 2021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기동훈련장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가. 현 황

토지대여료[1]는 경호안전교육원 기동훈련예정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세입처리하는 과목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토지대여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토지대여료	16	16	16	14	△2	△12.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분석의견

대통령경호처는 토지대여료 수납 대상 토지를 원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동훈련장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종합훈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인천시 계양구 소재 토지(183,261㎡)를 취득하였다. 경호종합훈련장 건설사업은 3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인 경호안전교육원 훈련동 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2011년에 완공되었고, 2단계인 경호안전교육원 교육동 건립 사업의 경우 2016년에 완공되었다. 그러나 3단계 사업인 기동훈련장 건설 사업은 2012년 2단계 사업 시 예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51-511

산 규모를 고려하여 3단계 사업으로 분리된 이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여, 2단계 사업이 종료된 2016년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기동훈련장 건립을 위한 유휴부지(77,955㎡)(이하 '기동훈련장 예정부지')를 계속 보유 중이며, 농민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2]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

[기동훈련장 예정부지 현황]

위치	면적	예상 공시지가	지목	토질
인천시 계양구	77,955㎡	295억원	답지(논), 잡종지 등 개발제한구역	연약지반

자료: 대통령경호처

2)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하 생략〉

「국유재산법」 제40조[3]는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고 이를 총괄청으로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동훈련장 예정부지는 2012년 사업 중단 이후로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용도폐지 후 총괄청으로 반납했어야 하나, 대통령경호처의 2022년 예산안에는 기동훈련장 건립 관련 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동시에, 동 부지를 총괄청으로 인계할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조의2[4]와「유휴 행정재산 현황 보고 지침(조달청 2017)」[5]에 의해 자체 활용계획 수립대상 재산으로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e-나라재산)에 보고 완료(2018.2.20.)하여 총괄청의 승인(2018.4.11.)을 받았으므로, 동 부지는 행정목적이 있는 재산으로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입장이다.

---

3)「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조의2(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따르거나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야 한다.

5)「유휴 행정재산 현황 보고 지침(조달청 2017)」
• 유휴 행정재산 보고 대상 및 보고 방법
1) 활용계획 대상
가. 각 중앙관서 소관 재산 중 용도폐지 대상 재산에 해당되나, 활용 계획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아래 활용계획(①~⑤)에 해당되는 경우, 활용 계획 대상 재산으로 보고
③ 자체 활용계획 수립(1차소속 기관장 이상 결재 득한 경우)
나. 향후 활용계획 내용대로 추진하여야 하며, 활용계획 미이행시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이관하여야 함

그러나 「유휴 행정재산 현황 보고 지침(조달청 2017)」은 자체 활용계획 수립대상 재산의 경우에도 '향후 활용계획 내용대로 추진하여야 하며, 활용계획 미이행시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동훈련장 예정부지와 관련한 활용계획 내용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여전히 용도폐지 및 총괄청 이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기동훈련장 예정부지 자체 활용계획 수립대상 재산으로 총괄청의 승인을 받은 2018년 이후로도 2021년도 예산안 편성까지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정당국에 요구한 바 없으며[6] 2022년도 예산안에도 해당 사업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자체 활용계획 수립대상 재산에 대하여 활용계획 내용대로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경호처는 기동훈련장 건립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동훈련장 예정부지를 우선 총괄청에 인계하고,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후에 취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2020년도의 경우 경호장비시설개선(1231-302) 사업에서 기동훈련장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국회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국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회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41억 6,3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억 7,500만원(12.9%) 증가하였다.

[2022년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294	3,688	3,688	4,163	475	12.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회

국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7,002억 8,8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0억 3,000만원(△0.7%) 감소하였다.

[2022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16,506	705,318	705,318	700,288	△5,030	△0.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회

한편, 국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2년도 국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2022년 개관 및 재개관 예정인 국회부산도서관과 국회박물관의 운영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2021년 4억 4,500만원 → 2022년 30억 900만원), 친환경 국회 조성 계획에 따라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2021년 8개소 1억 200만원 → 2022년 138개소 16억 5,900만원) 및 전기차 충전기(2022년 18개소 1억 1,300만원) 확충 예산이 반영되었다.

2022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부산도서관운영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주택임차보증금 및 주택보조비는 기본경비에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국회의 2022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7,000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국회부산도서관 기본경비 사업은 2022년에 개관하는 국회부산도서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이다.

[국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1개)	국회부산도서관 기본경비	70
합 계		70

자료: 국회

2022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관리국 기본경비 등이 있다.

①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은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계획에 따른 2차년도 공사비 등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관리국 기본경비 사업은 국회 청사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사무처 관리국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회부산도서관(2022년 개관) 근무 직원에 대한 주택보조비 등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국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1[1]		2022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2,633	2,633	11,360	8,727	331.4
	관리국 기본경비	106	106	207	101	95.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회

II 개별 사업 분석

1 직원 주택임차보증금 및 주택보조비는 기본경비에 편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국회도서관은 2022년도 국회부산도서관운영 사업의 예산안에 지방근무 직원들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차료(210-07목) 1억 5,100만원과 무형자산(440-00목) 예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국회부산도서관운영 사업 중 주택임차보증금 및 주택보조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결산	2021[1] 본예산	2021[1] 추경(A)	2022 예산안(B)	증감 B-A	증감 (B-A)/A
국회부산도서관운영	482	10,379	10,379	5,008	△5,371	△51.7
임차료(210-07목)	-	45	45	151	106	235.5
무형자산(440-00목)	-	150	150	150	-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회

나. 분석의견

국회부산도서관운영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주택임차보증금 및 주택보조비는 기본경비에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회도서관은 소속 공무원을 국회부산도서관에 근무하도록 전보하는 경우 「국회부산도서관 근무 공무원 지원에 관한 지침」[1]에 근거하여 주택임차보조금과 주택보조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국회부산도서관 근무 공무원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주택임차보증금 등의 지급 및 반납)

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부산도서관운영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에는 주택임차보증금 명목의 무형자산(440-00목) 예산 1억 5,000만원과 주택보조비(월세) 명목의 임차료(210-07목) 1억 5,100만원, 총 3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2년도 국회부산도서관운영 사업 예산안 중 직원 주택임차 관련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	편성내역	예산안
직원 주택임차	임차료(210-07목)	21인×60만원×12월=	151
	무형자산(440-00목)	15인×10백만원=	150
합계			301

자료: 국회

그런데 부산근무 직원들의 주택임차보증금과 주택보조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성격으로 주요사업비가 아닌 기본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국회사무처에서도 국회부산도서관 청사 관리를 위하여 관리국 직원을 국회부산도서관에 근무하도록 전보하는 경우 「국회부산도서관 근무 국회사무처 공무원 지원에 관한 지침」[2]에 근거하여 주택임차보증금과 주택보조비를 지원할 예정인데 관련 예산이 관리국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부산근무 직원들의 주택임차 관련 예산을 주요사업비가 아닌 기본경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① 국회부산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보조를 할 수 있다.
1. 1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
2. 1천만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과 월 60만원 이하의 주택보조비

2) 「국회부산도서관 근무 국회사무처 공무원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주택임차보증금 등의 지급 및 반납)
① 국회부산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보조를 할 수 있다.
1. 1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
2. 1천만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과 월 60만원 이하의 주택보조비

[2022년도 국회사무처의 국회부산도서관 전보 직원 주택임차 관련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비목	편성내역	예산안
관리국 기본경비	임차료(210-07목)	4인×60만원×12월=	29
	무형자산(440-00목)	4인×10백만원=	40
합계			69

자료: 국회

2 국회부산도서관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국회부산도서관운영 사업[1)]은 부산광역시 명지지구에 2022년 2월 개관하는 국회부산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3억 7,100만원이 감액된 5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국회부산도서관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회부산도서관운영	482	10,379	10,379	5,008	△5,371	△51.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회

나. 분석의견

국회부산도서관 주위 인프라 부족으로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부산도서관은 부산광역시 명지지구에 2022년 2월 개관할 예정으로 지역분관이라는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전시실 운영과 독서문화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런데 국회부산도서관이 위치하는 명지지구는 2단계 개발이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주변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없어 개관 시점에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하단역으로 6.7㎞ 떨어져있고, 버스정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3031-301

류장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후문으로 도보로 1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

이에 대해 국회도서관은 국회부산도서관 주위에 버스정류장 설치를 부산시에 요청하였으나 부산시에서는 도서관 이용방문객 증가 등 버스 노선 투입 환경 조성 시 노선조정 및 버스정류소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회부산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회부산도서관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국회게시판 디지털화 추진에 따른 시설물 보호대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국회게시판 디지털화 사업[1)]은 노후화된 국회 정문 앞 게시판을 디지털화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국회 입법활동 등에 대한 정보 전달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열린국회행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열린국회행사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열린국회행사지원	658	1,688	1,688	1,800	112	6.6
국회게시판 디지털화	-	-	-	140	14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회

나. 분석의견

국회 정문 앞의 국회게시판 위치는 피켓 시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곳이고, 과거 국회 앞 집회 시 안전 펜스가 파손된 경우를 감안할 경우 디지털 게시판의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제작 이후 구체적인 시설물 보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2022년도 예산안에 국회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대국민 정보 전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992년 설치된 국회 앞 국회게시판을 디지털 게시판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1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2031-304의 내역사업

면, 동 예산안은 디지털 게시판 제작비(자산취득비) 9,000만원, 콘텐츠 제작비(일반용역비) 5,0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국회게시판 디지털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	편성내역	예산안
국회게시판 디지털화	일반용역비(210-14목)	콘텐츠 제작	50
	자산취득비(430-01목)	디지털 게시판 제작	90
합계			140

자료: 국회

그런데 현재 국회 앞 게시판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피켓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파손될 가능성이 국회경내 시설물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동 게시판을 디지털 게시판으로 교체한 이후 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비용이 높고, 수리기간이 길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 보호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향후 디지털 게시판을 제작할 때 외부 충격에 의한 시설물 손상 등에 대한 보호 장치를 반영할 예정이고, 디지털 게시판 설치 이후에도 시설물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국회 정문 앞 국회게시판 디지털화 이후 파손이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1,2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9,000만원(△88.2%) 감소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4.4	102	102	12	△90	△88.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393억 8,6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4억 5,500만원(3.8%) 증가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6,187	37,931	37,931	39,386	1,455	3.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13개의 세부사업 중 8개의 세부사업이 2021년 대비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② 이 중,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등 인권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과 인권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예산이 20%이상 증액 편성되었다. ③ 그 외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세부사업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의 '1331 전화상담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교체' 예산이 181백만원이 편성되어 30%이상 증액되었고, ④ 지역인권문화 확산(2021년 3억 1,500만원 → 2022년 3억 2,400만원), 취약분야 인권개선(2021년 12억 7,000만원 → 2022년 12억 8,400만원), e-진정시스템 구축 운영(2021년 7억 4,700만원 → 2022년 7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202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사업은 재외공관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이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워 보이므로 조사방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주요 증액사업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증액사업은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사업으로, CTI 전화 상담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교체 예산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1[1]		2022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60	160	343	183	114.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II 개별 사업 분석

1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방법 보완방안 검토 필요

가. 현 황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사업[1)]은 중국, 태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파악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 및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한인권개선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북한인권개선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북한인권개선	164	162	162	151	△11	△6.8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조성	79	107	107	111	4	3.7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0	15	15	15	0	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34-303의 내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사업은 재외공관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이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워 보이므로 조사방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해외 주재 북한이탈주민 체류 국가를 선정한 후 재외공관, 수용시설 실태파악과 국제NGO 관련기관 방문 등을 통해 해외체류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현지조사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고, 2021년은 현재까지 현지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에는 태국과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주재국 한국 공관 대사 및 북한이탈주민 담당자 면담, 현지 인권활동가 면담 등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런데 재외공관 관련자나 현지 인권활동가 면담 정도는 현지조사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재외공관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은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현황파악이 쉽지 않은 등 현지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국가 기관 및 현지 공관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해외체류 탈북민의 인권 보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사업은 현행 방법으로는 실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방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2년도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	편성내역	예산안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국외업무여비(220-02목)	5인 항공료, 일비, 식비 등	12
	사업추진비(240-01목)	정액경비, 연회비 등	3
합계			1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법무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조 4,256억원으로 2021년도 대비 5,987억원(29.6%)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3,569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647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40억원이다.

[2022년도 예산안 법무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399,849	2,020,365	2,020,365	1,421,589	△598,776	△29.6
- 일반회계	1,336,475	1,930,623	1,930,623	1,356,877	△573,746	△29.7
- 교도작업특별회계	63,374	89,742	89,742	64,712	△25,030	△27.9
기 금	4,256	3,931	3,931	3,998	67	1.7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4,256	3,931	3,931	3,998	67	1.7
합 계	1,404,105	2,024,296	2,024,296	1,425,587	△598,709	△29.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법무부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법무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조 2,698억원으로 2021년도 대비 2,115억원(5.2%)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조 1,202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669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27억원이다.

[2022년도 예산안 법무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586,644	3,952,920	3,952,920	4,187,119	234,199	5.9
- 일반회계	3,521,238	3,883,287	3,883,287	4,120,245	236,958	6.1
- 교도작업특별회계	65,406	69,633	69,633	66,874	△2,759	△4.0
기 금	97,323	105,329	105,329	82,655	△22,674	△21.5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7,323	105,329	105,329	82,655	△22,674	△21.5
합 계	3,683,966	4,058,249	4,058,249	4,269,774	211,525	5.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법무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교도작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4,784억원으로 2021년도 대비 5,905억원(28.5%)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3,569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216억원이다.

[2022년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336,475	1,930,623	1,930,623	1,356,877	△573,746	△29.7
교도작업특별회계	104,186	138,372	138,372	121,571	△16,801	△12.1
합 계	1,440,661	2,068,995	2,068,995	1,478,448	△590,547	△28.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4조 3,360억원으로 2021년도 대비 2,083억원(5.0%)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조 2,144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216억원이다.

[2022년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603,678	3,989,341	3,989,341	4,214,445	225,104	5.6
교도작업특별회계	107,406	138,372	138,372	121,571	△16,801	△12.1
합 계	3,711,084	4,127,713	4,127,713	4,336,016	208,303	5.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법무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만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001억원으로 2021년도 대비 99억원(9.0%) 감소하였다.

[2022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4,355	109,985	109,985	100,114	△9,871	△9.0

주: 1)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라. 재정구조

2022년도 예산안의 법무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942억원이 전출된다.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47억원을 예탁하며, 예탁원금 회수 450억원 및 예탁이자수입 20억원이 발생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942억원이 전입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원금 25억원 및 이자 1억원을 상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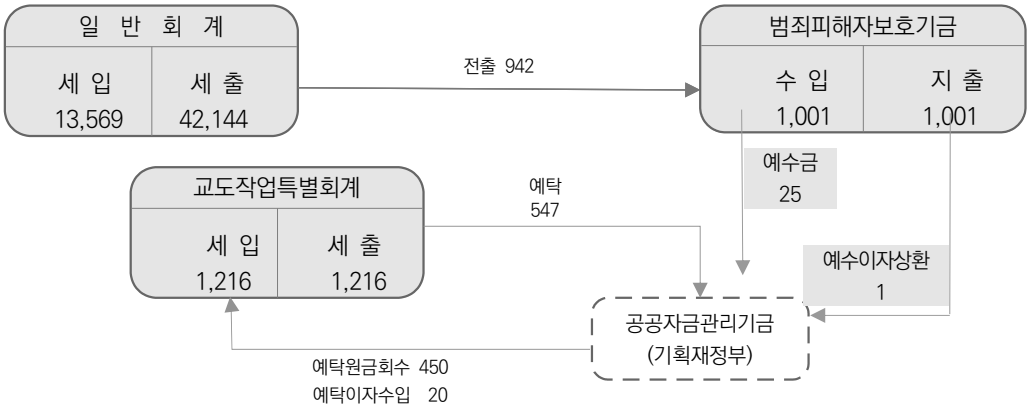

주: 총계기준
자료: 법무부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2년도 법무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 수용시설로서 다양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물품 및 시설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AI 법률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혁신·민생포용 법률구조서비스 확대 예산을 반영하였다. 셋째,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절차를 ‘종이기록’ 기반에서 ‘전자문서’ 기반으로 바꾸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2차년도 개발비를 반영하였고, 넷째,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상근 진술조력인을 확대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다섯째, 수용자 과밀해소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수용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예산을 반영한 것을 들 수 있다.

2022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토지대여료 및 기타잡수입은 매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연례적으로 동일한 세입예산(토지대여료는 2016년부터, 기타잡수입은 2015년부터)을 편성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를 위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수납액 등을 근거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정된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따른 사건감소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제도 안착 후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 예산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 및 집행률 부진 등을 고려하여 유류비 및 국내여비의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무부는 외부 회의장을 연중 상시 대관하고 있는데, 사용횟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동 사업의 주관부서인 법무심의관실 사용횟수는 2020년 기준 12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22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부 회의장 임차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무부는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설하는 해외진출 아카데미 과정에 강사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 아카데미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인턴은 2019년 1명에 불과하고 아카데미 수료 여부와 무관한 예비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해외인턴 파견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법무부의 생활법률지식서비스 '버비'의 챗봇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24년까지 구축 예정인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와 법률 관련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버비의 생활법률지식 카드뉴스는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카드뉴스형 생활법령'과 서비스 내용이 중복되므로, 법교육 목적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2021년 5월 착수)과는 달리 2021년 9월말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법무부는 근거 법률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공익법무관은 2021년 9월말 현재 총 142명이고 2022년 8월 1일자로 60명이 전역 예정이므로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신규 편입인원 확보를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법무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신규 사업은 편성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국가배상금지급',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사업 등 총 9개이다.[1)]

'국가배상금지급' 사업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해위 및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 배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2,500억원이 편성되었다.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사업은 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을 통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자금추적으로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8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교정시설 장비 운용 및 현대화' 사업은 전국 교정시설의 유지·보수 및 수용 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1,061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사업은 법질서 실천운동, 법교육 교재 개발·보급,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8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지원' 사업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후 임관된 신임검사에 대한 교육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11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사업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수사·재판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사건 관계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619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기타법무시설개보수 및 확충' 사업은 검찰청, 소년원 등 법무시설의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 등의 리모델링 및 개·보수를 통한 사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199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

1)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은 흉악범죄 등 중대범죄의 범죄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변보호를 강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29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은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조력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91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다.

[법무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1년도[1]		2022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일반회계]						
1	국가배상금지급	150,000	150,000	250,000	100,000	66.7
2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4,056	4,056	8,260	4,204	103.6
3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79,655	79,655	106,136	26,481	33.2
4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4,463	4,463	8,430	3,967	88.9
5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지원	890	890	1,188	298	33.5
6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구축(정보화)	19,659	19,659	61,948	42,289	215.1
7	기타법무시설개보수및확충	12,869	12,869	19,938	7,069	54.9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1,417	1,417	2,955	1,538	108.5
9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6,869	6,869	9,187	2,318	33.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법무부

II 주요 현안 분석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의 문제점

법무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관유물대여료,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 추경예산 대비 5,737억 4,600만원이 감액된 1조 3,568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결산	2021예산[1]		2022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총 계	1,336,475	1,930,623	1,930,623	1,356,877	△573,746	△29.7
관유물대여료(51)	1,283	1,935	1,935	1,997	62	3.2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54)	430	339	339	319	△20	△5.9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56)	1,307,652	1,897,052	1,897,052	1,309,558	△587,494	△31.0
변상금및위약(57)	640	962	962	1,023	61	6.3
가산금(58)	3	246	246	246	0	0.0
기타경상이전수입(59)	9,183	7,980	7,980	7,980	0	0.0
면허료및수수(65)	6,564	4,636	4,636	18,263	13,627	293.9
잡수입(69)	705	1,429	1,429	1,429	0	0.0
면허료및수수료(수입대체경비)(65)	9,702	15,459	15,459	15,459	0	0.0
잡수입(수입대체경비)(69)	309	585	585	603	18	3.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1-1. 토지대여료, 기타잡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세입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토지대여료[1]는 토지대여에 따른 수입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1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잡수입[2]은 치료감호소 정신감정수수료, 폐기물 및 불용품 매각대 등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14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토지대여료 및 기타잡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토지대여료	507	1,277	1,277	1,277	0	0.0
기타잡수입	705	1,429	1,429	1,429	0	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토지대여료 및 기타잡수입은 매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연례적으로 동일한 세입예산(토지대여료는 2016년부터, 기타잡수입은 2015년부터)을 편성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를 위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수납액 등을 근거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대여료 및 기타잡수입의 최근 4년간 예산액 대비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동일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51-511
2) 코드: 일반회계 69-691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는 2016년부터 토지대여료 예산으로 매년 12억 7,7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018년 82.9%에서 2020년 39.7%로 감소하였고 2021년 9월말 기준 수납률은 3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기타잡수입 예산도 2015년부터 동일하게 14억 2,9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018년 74.7%에서 2020년 49.3%로 감소하였고 2021년 9월말 기준 수납률은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토지대여료 및 기타잡수입 예산액 대비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토지대여료	2018년	1,277	1,362	1,059	82.9
	2019년	1,277	724	532	41.6
	2020년	1,277	649	507	39.7
	2021년(9월말)	1,277	545	394	30.9
기타잡수입	2018년	1,429	1,067	1,067	74.7
	2019년	1,429	887	887	62.1
	2020년	1,429	708	705	49.3
	2021년(9월말)	1,429	354	324	22.7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처럼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 실제 세입규모가 왜곡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근 수납실적, 수납규모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수납액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대여료 및 기타잡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한 조정의견]

(단위: 백만원)

목명	2022년 예산안(A)	조정안 (B)	증 감 (B-A)	비고
토지대여료 (51-511)	1,277	699	△578	최근 3년간(2018-2020) 징수액의 평균치 반영
기타잡수입 (59-596)	1,429	886	△543	최근 3년간(2018-2020) 징수액의 평균치 반영

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사용에 따른 사용료(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예산편성 및 징수·수납 필요

가. 현 황

토지대여료[1]는 토지대여에 따른 수입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1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건물대여료[2]는 건물대여에 따른 수입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6,100만원이 증액된 7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토지대여료	507	1,277	1,277	1,277	0	0.0
건물대여료	762	642	642	703	61	9.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1년 9월 말 현재 55개 센터(연합회 포함)가 검찰청 청사 내에 소재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료 감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검찰청 청사 사용에 따른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를 예산에 편성하여 징수·수납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체 60개소 중 55개소[3]가 국유재산인 검찰청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51-511
2) 코드: 일반회계 51-512
3) 60개소 중 5개소(속초, 영월, 제천·단양, 김천·구미, 장흥·강진)는 검찰청 청사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4)]

다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국유재산법」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5)]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기부체납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니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제4조[6)]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도 아님에도 법무부는 검찰

---

4)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82조(벌칙)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 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청 청사 사용에 따른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를 예산에 편성하여 징수·수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법무부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국유재산법」에 따라 검찰청 청사의 사용료를 조속히 수납할 것”을 시정요구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개정을 검토할 것”을 함께 요구하였다.[7)]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검찰청 청사에 소재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현재 사용 중인 국유재산의 정확한 재산가액 등을 알 수 없어 예상되는 사용료를 산출하기 어려우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국가의 책무인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입안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를 감면받을 법률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이상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사용에 따른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를 산출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징수·수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0. 11. p.92.

2 검찰활동 프로그램 예산편성의 문제점

검찰활동 프로그램은 검찰운영, 검찰업무정보화,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공판활동 및 형집행, 형사사법선진화 등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억 600만원(0.67%) 증액된 3,335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검찰활동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집행	2021년[1]		2022년도 예산안(B)	증감	
		예산(A)	집행 (9월말 기준)		B-A	(B-A)/A
검찰활동 프로그램	313,348	333,076	219,186	333,582	506	0.67
검찰운영	111,661	118,913	76,227	120,587	1,674	1.4
검찰업무정보화	41,086	45,047	26,171	43,697	△1,350	△3.0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114,552	122,754	79,519	118,571	△4,183	△3.4
공판활동 및 형집행	45,829	46,066	37,192	50,385	4,319	9.4
형사사법선진화	220	295	76	342	47	15.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2-1. 개정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후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개정된 형사사법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은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으로, 동 단위사업은 형사부 등 수사지원,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마약수사,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등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위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억 8,300만원이 감액된 1,185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1]		2022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조정(B)	(B-A)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1335)	114,552	122,754	122,754	118,571	△4,183	△3.4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84,138	88,508	88,508	87,733	△775	△0.9
공공수사 (1335-302)	5,029	4,899	4,899	4,441	△458	△9.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11,301	13,912	13,912	12,171	△1,741	△12.5
마약수사 (1335-304)	4,574	4,876	4,876	4,385	△491	△10.1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1335-305)	2,999	3,410	3,410	3,621	211	6.2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335-306)	6,510	7,150	7,150	6,220	△930	△13.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2020년 1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에 따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의 수사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법무부는 개정된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따른 검찰예산 재구조화를 실시하고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3.4%(41억 8,300만원) 감액한 1,18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다.

세부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이 발생한 목별 증감액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전년 대비 17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되었고, 일반수용비 및 특수활동비가 각각 16억 7,200만원, 3억 8,600만원 감액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별 목별 증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형사부등 수사지원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마약수사	사회적약자 대상범죄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합 계
상용임금	370 (1.9)				8 (1.9)		378
일반수용비	**36 (0.4)**	**△91 (△34.9)**	**△824 (△21.0)**	**△198 (△24.2)**	**△34 (△3.6)**	**△561 (△26.4)**	**△1,672**
특근매식비	전년 동	△185 (△37.2)	전년 동	△15 (△4.3)	전년 동	전년 동	△200
국내여비	전년 동	전년 동	△145 (△15.8)	△50 (△26.3)	△20 (△19.3)	전년 동	△215
국외업무여비			90 (209.8)	△15 (△11.0)		△16 (△10.0)	59
특수활동비	**△267 (△5.0)**	**△19 (△5.0)**	**△77 (△5.0)**	**△14 (△5.0)**		**△9 (△5.0)**	**△386**
사업추진비	△41 (△4.1)	전년 동	△172 (△38.6)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213
특정업무경비	**△639 (△1.9)**	**△196 (△11.5)**	**△570 (△20.0)**	**△35 (△3.0)**	**△157 (△20.0)**	**△181 (△20.0)**	**△1,778**
포상금	전년 동	34 (26.4)	전년 동	△164 (△54.5)	전년 동		△130
고용부담금	96 (2.6)				3 (4.0)		99
공사비	전년 동				142 (34.3)		142
자산취득비	△330 (△7.0)	전년 동	△43 (△5.4)		268 (462.4)	△163 (△68.9)	△268

자료: 법무부

첫째, 개정된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따른 사건감소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제도 안착 후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 예산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형사사법제도 시행 후 사법경찰관의 순 송치·송부 건수를 살펴보면, 3월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78.1%에 머물렀으나 6월 누계는 92%, 8월 누계는 95.3%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송치·송부 현황]

(단위: 건수, %)

구 분	3월말 누계	6월말 누계	8월말 누계[3]
2020년 송치[1]	290,874	586,250	795,111
2021년 순송치·송부[2]	227,241	538,889	758,046
전년동기 대비	78.1	92.0	95.3

주: 1) 2020년 송치건수에는 기소의견 송치건수, 불기소의견 송치건수외에 기소유예·기소중지·가정보호사건·소년보호사건·타관이송 등 기타의견 송치건수가 포함되어 있음.
2) 2021년 순송치·송부는 사법경찰관 송치건수-보완수사 후 송치건수-이의신청 송치건수+불송치송부건수+수사중지 송부건수를 말함.
3) 9월 통계는 10월말 산출 가능
자료: 법무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월말 기준 송치건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고 불송치 송부건수는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사법경찰관의 순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3월 누계 기준 11.3%에서 8월 누계 기준 11.6%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송치 및 불송치송부 현황(8월말 기준)[1]]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2020년 기소의견 송치	448,591	2020년 불기소의견 송치	243,734
2021년 송치	441,803	2021년 불송치송부	257,064
증감 비교	1.5% 감소	증감 비교	5.4% 증가

주: 1) 9월 통계는 10월말 산출 가능
자료: 법무부

[2021년 순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현황]

(단위: 건수, %)

구 분	3월 말 누계	6월 말 누계	8월 말 누계[3]
사법경찰관 순 송치사건 수 (송치일자 기준)	132,003	313,503	441,803
보완수사요구(결정)[1]	14,729	34,616	50,764
보완수사요구(추완)[2]	239	482	632
보완수사요구 비율	11.3	11.2	11.6

주: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3) 9월 통계는 10월말 산출 가능
자료: 법무부

또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과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등 사법통제율도 3월말 누계 5.3%에서 8월말 누계 5.6%로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불송치사건 사법통제 현황]

(단위: 건수, %)

구 분	3월 말 누계	6월 말 누계	8월 말 누계[1]
사법경찰관 불송치사건 수 (검토완료 건수(A))	75,094 (64,047)	181,655 (165,313)	257,064 (241,207)
재수사요청 건수(B)	2,852	6,623	9,537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건수(C)	571	2,288	3,869
불송치사건 사법통제율{(B+C)/A}	5.3%	5.4%	5.6%

주: 1) 9월말 통계는 10월말 산출 가능
자료: 법무부

반면에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8]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8월말 누계 기준 25.5%로 감소하였고, 검사인지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8월말 누계 기준 54.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검찰 고소·고발사건 및 검사인지 건수 현황]

(단위: 건수, %)

구 분	3월 말 누계	6월 말 누계	8월 말 누계[1]
검찰 직접접수 고소·고발 사건	7,695	13,533	17,588
전년동기 대비	△31.5	△26.5	△25.5
검사인지 건수	754	1,736	2,214
전년동기 대비	△66.0	△59.9	△54.3

주: 1) 9월말 통계는 10월말 산출 가능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 감소 건수(51,335건)의 75.0%가 사법경찰관 이송 사건으로,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경찰에 수사지휘한 후 송치받아 처리하였으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업무량 변화와 관련성이 낮다고 설명한다.

[2020년 대비 2021년 검찰 접수 고소·고발사건 현황(8월말 누계 기준)]

(단위: 건수)

구 분	2020. 8월말(A)	2021. 8월말(B)	증감(B-A)
합계	68,923	17,588	△51,335
검사실 직접수사	13,489	3,211	△10,278
수사·조사과 지휘	3,675	1,395	△2,280
특사경 지휘	377	88	△289
사법경찰관 이송 ('20년 수사지휘)	51,382	12,894	△38,488

자료: 법무부

8)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위 범죄 및 사경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또한 법무부는 검찰(검사실 및 수사·조사과)이 직접 수사하여 처리한 사건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594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전체 처리사건(592,522건)의 1.2%에 불과하고 업무량 및 예산집행과 그다지 관련성이 없는 각하처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504건 감소하여 전체 감소건수(7,594건)의 72.5%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대비 2021년 검찰 직접수사 처리 현황(8월말 누계 기준)]

(단위: 건수)

구 분	2020. 8월말(A)	2021. 8월말(B)	증감(B-A)
합계	**14,828**	**7,234**	**△7,594**
기소	4,181	2,865	△1,316
혐의없음	1,350	982	△368
죄가안됨	8	5	△3
공소권없음	176	91	△85
각하	8,343	2,839	△5,504
기소중지/참고인중지	549	351	△198
기타	221	101	△120

자료: 법무부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정된 형사사법제도 시행 초기로서 사건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적정 예산 규모가 현 단계에서는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 안착 후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의 예산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 및 집행률 부진 등을 고려하여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의 유류비 예산안 조정과 국내여비의 추가적인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22년도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의 유류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전년 대비 2억 1,500만원 감액된 2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 유류비 및 국내여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형사부등 수사지원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마약수사	사회적약자 대상범죄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합 계
유류비 (210-08)	212	199	200	13	0	140	764
국내여비 (220-01)	1,145	279	772	140	84	388	2,808

자료: 법무부

그런데 최근 3년간(2018~2020년) 유류비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8.5%에서 56.6%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인 2021년 집행률은 9월말 현재 37.2%에 그치고 있다.

[최근 4년간 수사 관련 5개 세부사업의 유류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		2019		2020		2021. 9월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형사부등 수사지원	414	177	401	88	315	68	212	15
공공수사	204	193	199	187	199	129	199	100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419	307	300	250	300	205	200	92
마약수사	22	4	13	8	13	8	13	0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03	184	280	261	280	217	140	76
합 계	1,262	865 (68.5)	1,193	795 (66.6)	1,107	627 (56.6)	764	284 (37.2)

자료: 법무부

또한 국내여비도 2019년을 제외하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8.9%~84.1%이고 2021년의 경우 9월말 현재 29.3%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4년간 수사 관련 6개 세부사업의 국내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		2019		2020		2021. 9월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형사부등 수사지원	1,131	1,039	1,017	1,017	1,017	751	1,145	367
공공수사	234	233	224	270	294	189	279	73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1,029	858	902	902	902	610	917	216
마약수사	209	203	200	247	200	114	190	56
사회적약자 대상범죄 수사	302	162	189	200	79	42	104	33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497	365	475	511	388	277	388	141
합 계	3,401	2,860 (84.1)	3,007	3,147 (104.7)	2,880	1,983 (68.9)	3,023	886 (29.3)

자료: 법무부

물론 올해 유류비 및 국내여비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비해서도 현저히 집행률이 낮은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1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최소화, 형집행 관련 구금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시'를 각 검찰청에 내림에 따라 수사 및 형집행 관련 출장이 자제된 데 따른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유류비 및 국내여비는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비목임을 고려할 때 유류비 예산의 조정 및 국내여비의 추가적인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법적 근거 없는 포상금 편성 문제 등

가. 현 황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사업[9]은 인권 및 양성평등 강화, 감찰활동 강화, 인력 선발관리 및 직무역량 강화 등 검찰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검찰활동 프로그램 예산과목 구조개편으로 내역사업인 사건처리 및 양형기준 정립 사업(2억 100만원)이 공판활동지원 사업으로, 형집행 관련 사업(43억 4,800만원)이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사업으로 이관되었고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등 공통경비(1억 8,200만원)가 감액되었으며, 인권감독 강화 사업이 증액(7억 6,100만원)됨에 따라 전년 대비 36억 1,300만원이 감액된 248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26,776	28,415	28,416	24,803	△3,613	△12.7
일반수용비 (210-01)	7,134	6,871	6,871	4,032	△2,839	△41.3
포상금 (310-03)	0	0	0	8	8	10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9) 코드: 일반회계 1333-306

나. 분석의견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무부는 2022년도에 신규로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점검 관련 포상금을 편성하였는데, 법령상 지급근거가 없으므로 법무부는 포상금 예산 편성에 앞서 법령상 지급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포상금(310-03목)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자 또는 기관에게 격려·포상을 위해 지급하는 상금, 상여금 및 격려금, 예산절약상여금 등을 말하며, 법무부는 2022년도에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권감독 강화사업'에 포상금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청이 시행 중인 각종 인권보호 업무의 조기정착 및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인권제도의 발굴 및 이행 우수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상시기는 매년 7월과 12월 2회로, 반기별 2개청에 대하여 청별 200만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선정기준으로는 ① 인권보호 수사규칙 안내문 고지 등 점검대상 업무 이행 우수청, ② 우수 인권보호제도 발굴·시행 등 인권보호 노력 우수청, ③ 시행 중인 인권보호업무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우수청 ④ 그 밖에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공헌 우수청 등 종합평가 등을 들고 있다.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 점검 우수청 포상계획(안)]

◦ 포상명: 인권보호업무 이행 우수청 ◦ 포상시기: 매년 7월, 12월(반기별 1회) ◦ 포상규모: 반기별 2개청, 청별 200만원 상당 ◦ 포상대상: 이행 우수 검찰청 ◦ 포상 대상청 선정기준 - 인권보호수사규칙 안내문 고지 등 점검대상업무 이행 우수청 - 우수 인권보호제도 발굴·시행 등 인권보호 노력 우수청 - 시행중인 인권보호업무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우수청 - 그밖에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공헌 우수청 등 종합평가

자료: 법무부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 점검 관련 포상금은 그 지급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현재 인권보호 업무 우수청 보상에 대한 법령상 지급 근거는 없으나, 향후 대검찰청 자체 포상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무리 포상금의 도입 취지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근거도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무부는 포상금 예산 편성에 앞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법무부는 검찰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예산(7,0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목)에 편성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검찰청 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 등을 위한 'PROS-힐링 프로그램' 운영비로 그 성격상 일반용역비(210-14목)로 비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210-14목)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용역비는 민간위탁, 법정대행, 연구용역, 관리용역이 아닌 모든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를 말한다.

검찰역량강화 교육은 사건조사, 악성민원인 응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청 직원의 심신치유·안정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의 예방 및 심신안정 유도를 통한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극대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2박 3일 일정의 'PROS-힐링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실시되었고, 2021년에는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당일 일정으로 총 7회에 걸쳐 1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도 검찰 PROS-힐링 프로그램 추진계획]

차수	일시	대상인원(총 164명)
1차	’21. 10.22.(금)	서울고검 산하 5팀(20명)
2차	’21. 10.28.(목)	서울고검 산하 6팀(24명)
3차	’21. 10.29.(금)	수원고검 산하 6팀(24명)
4차	’21. 11. 4.(목)	대전고검 산하 6팀(24명)
5차	’21. 11. 5.(금)	광주고검 산하 6팀(24명)
6차	’21. 11.11.(목)	대구고검 산하 6팀(24명)
7차	’21. 11.12.(금)	부산고검 산하 6팀(24명)

자료: 2021년도 검찰 PROS-힐링 운영계획

이와 같이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집행하는 것은 일반수용비(210-01목)가 아닌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하는 것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법무부는 검찰역량강화 교육의 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아 · 태사이버범죄 개도국 허브 사업 관련 국외 업무여비 효율적 집행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10]은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과학수사 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며 국제 과학수사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3,200만원이 증액된 88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과학수사인프라구축	6,751	8,088	8,088	8,820	732	9.1
아·태사이버범죄 개도국 허브	-	371	371	362	△9	△2.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아·태사이버범죄 개도국 허브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도에 역량강화 선정국가 3개국 초청교육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초청 대상국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사전방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22년도 국외업무여비 중 일부를 초청 대상국 선정을 위한 방문경비로 집행하고 초청대상국을 3개국에서 2개국으로 줄이는 등 국외업무여비의 효율적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0) 코드: 일반회계 1333-302

아 · 태사이버범죄 개도국 허브 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아·태 개도국 관계자에 대해 사법, 입법, 기소, 수사 등 훈련을 제공하고 아이디어 교환 및 사이버범죄 우수경험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공조 협력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아태지역 사이버범죄 척결의 중심지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태사이버범죄 개도국 허브 사업 목적]

대검찰청은 2014년 6월부터 월드뱅크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 구축 프로젝트'에 주 파트너로 참여해 왔는데, 2019년 11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대검찰청과 월드뱅크, 사이버역량강화 전문포럼인 GFCE[11]가 허브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함에 따라 2020년 1월 대검찰청 국제공조센터에 허브 사무국이 정식 개소되었다.

사업수행 첫해인 2021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아·태사이버범죄 개도국 허브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작성과 전문인력 채용 및 로고 제작을 추진하였고 올해 말 허브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11) Global Forum on Cyber Expertise의 약자로 현재 140개 국가 및 기관이 멤버 및 파트너로 가입되어 있다.

[2021년도 아태사이버범죄 개도국 허브 사업 추진현황]

◦ ’21.2. APC-HUB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작성 및 월드뱅크, GFCE, 대검 내용 합의 완료
◦ ’21.5. 무기계약직 2명 채용(영문에디터 1명, 행정보조 1명), APC-HUB 로고 제작 완료
◦ ’21.7.~12. 허브 홈페이지 구축
◦ ’21.8. 월드뱅크와 허브 진행 상황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 개최

자료: 법무부

그런데 2021년 9월말 현재 동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14.4%로 부진하며 특히 아·태지역 관계자 초청 교육훈련 및 허브 총회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및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허브 교육훈련 진행을 위해 사전에 훈련 대상국 방문 및 개도국 평가[12]가 선행되어야 하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해당 국가 관계자 협의를 위한 국외출장이 제한되어 프로젝트 진척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자산취득비(7,150만원)의 경우 허브 홈페이지를 위한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 위임발주한 상태로 12월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2021년도 아·태사이버범죄 개도국 허브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1		2022
	예산액	집행액(9월말 기준)	예산안
상용임금(110-03)	48,952	21,881	49,784
일반수용(210-01)	106,048	3,850	106,048
특근매식(210-05)	972	0	972
복리후생(210-12)	800	533	800
국외업무여비(220-02)	91,921	0	82,728
사업추진비(240-01)	5,880	0	5,292
일반연구비(260-01)	35,750	25,025	35,750
고용부담금(320-09)	8,800	2,101	8,800
자산취득비(430-01)	71,500	0	71,500
합 계	370,623	53,390	361,674

자료: 법무부

12) 사이버범죄 대응 현황 파악 등

그런데 2021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역량강화 선정국가 평가를 위한 국외출장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 실시되지 못하였고,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초청 대상국이 미얀마, 캄보디아, 미크로네시아 등 코로나19의 취약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면 2022년에 3개국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2년도 3개국 초청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중 일부를 역량강화 선정국가 선정 및 평가를 위한 방문경비로 우선 집행하고 초청대상국을 3개국에서 2개국으로 줄이는 등 국외업무여비의 효율적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법무부는 동 사업의 공공요금(210-02목) 비목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공공요금(약 9,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경우 대검찰청 공공요금에 합산하여 부과되고 있으므로 검찰청운영기본경비 공공요금 비목에 일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는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증거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분석으로 일선 수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기 위하여 설립된 대검찰청 소속기관으로 2008년 10월 개관되었다.

법무부는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사업의 공공요금 비목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공공요금 및 이동식 감정장비 손해보험료를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공공요금 집행액을 살펴보면, 2018년 2억 4,600만원, 2019년 2억 1,500만원, 2020년 1억 6,000만원 등 점차 감소하고 있고 2021년 9월말 현재 집행액은 4,800만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매년 집행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공공요금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 본관 옆에 위치하여 대검찰청 공공요금과 함께 부과되고 있으나, 대검찰청 공공요금은 검찰청운영기본경비에 편성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 공공요금은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사업에 별도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검찰청운영기본경비 공공요금 항목에서 부족분만큼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공공요금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공공요금 집행액이 매년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4년간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디지털포렌식센터 공공요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9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공공요금 및 제세	359	246	213	215	90	160	90	48

자료: 법무부

이와 관련하여 검찰청운영기본경비 공공요금의 최근 4년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1억 4,300만원에서 2020년 18억 700만원으로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07.8%로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검찰청운영기본경비 공공요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9월말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공공요금 및 제세	1,186	1,143	1,178	1,171	1,676	1,807	1,676	1,142

자료: 법무부

결론적으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부과되는 대검찰청 공공요금을 2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집행하는 것은 동 비목의 집행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무부는 국가디지털센터 공공요금을 검찰청운영기본경비 공공요금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

3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예산안 편성 간 연계 강화 필요

가. 현 황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에 따라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이다.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100점 만점±가감점)를 종합하여 3단계(우수, 보통, 미흡)로 등급화하도록 하고 있다.

상대평가 기준을 보면,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수가 10개 이상인 부처는 전체 평가대상사업에 대해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되, 상대평가 비율은 '우수'사업 20% 이하, '보통'사업 70% 내외, '미흡'사업 10% 이상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사업이 전체 평가대상사업 예산규모의 20%를 초과하는 부처는 '사업수' 기준으로 미흡사업을 선정하고 상대평가 비율은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3]

법무부의 2020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은 단위사업 기준으로 총 23개이며, 평가결과 사업 수로는 우수 4개(17.4%), 보통 15개(65.2%), 미흡 4개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대상사업 수가 10개 미만인 부처는 별도의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17.4%)이고, 각 등급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액 합계는 우수 881억원(11.0%), 보통 6,199억원(77.6%), 미흡 913억원(11.4%)이다.

[법무부 2020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단위: 개, 억원, %)

평가대상사업 수 및 평가결과				평가대상사업의 2020년도 예산규모			
계	우수	보통	미흡	계	우수	보통	미흡
23	4	15	4	7,993	881	6,199	913
(100.0)	(17.4)	(65.2)	(17.4)	(100.0)	(11.0)	(77.6)	(11.4)

자료: 법무부, "2020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2021.3.

사업별 2020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는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갱생보호, 보호관찰, 법무행정정보화 사업이고, '보통'은 국가송무수행, 법률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선발, 법률구조, 국제이민협력, 외국인체류관리, 검찰운영,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공판활동 및 형집행, 재소자수용 및 교화, 소년보호, 치료감호, 법질서준수 및 법교육,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 성폭력피해자보호 및 지원 사업이며, '미흡'은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 검찰업무정보화, 연수원운영, 강력범죄 등 피해자보호 및 지원 사업이다.

[사업별 2020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단위: 점, 억원)

등급	회계	단위사업명	평가점수	2020년도 예산
우수	일반회계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91.24	43
		갱생보호	91.51	330
		보호관찰	92.42	120
		법무행정정보화	91.71	388
보통	일반회계	국가송무수행	87.8	1,025
		법률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선발	85.73	17
		법률구조	85.16	582
		국제이민협력	83.69	27

(단위: 점, 억원)

등급	회계	단위사업명	평가점수	2020년도 예산
		외국인체류관리	84.15	471
		검찰운영	86.17	880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89.01	1,451
		공판활동 및 형집행	90.48	415
		재소자수용 및 교화	90.46	71
		소년보호	86.41	270
		치료감호	89.01	76
		법질서준수 및 법교육	90.44	47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90.46	92
	교도작업특별회계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	87.33	7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성폭력피해자보호 및 지원	88.94	75
미흡	일반회계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	80.12	17
		검찰업무정보화	83.62	429
		연수원운영	79.84	7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 및 지원	77.07	397

자료: 법무부, “2020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2021.3.

나. 분석의견

2020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법무부는 미흡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계획(감액요구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실제로는 9개 세부사업 중 6개 세부사업에 대해 2021년 대비 2022년도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여 이 중 2개 세부사업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 및 정보화 구축사업 완료 등으로 2022년 예산소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반영시키는 등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충실히 환류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 항목은 사업적정성(10점), 집행률제고노력(30점), 성과목표달성도(40점), 사업성과우수성(10점), 제도개선노력(1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점항목으로는 외부지적사항(최대 5점)이 있고 가점항목으로는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일반재정, 4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정보화, 4점), 사회적 가치 반영(일반재정·정보화, 1점) 등이 있다.

미흡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4개로, 각 사업의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로 집행률제고노력과 성과목표달성도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2020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사업의 항목별 평가점수]

(단위: 점)

단위사업명	총점	사업적정성		집행률제고노력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성과우수성		제도개선노력		가감점
		배점	점수	배점	점수	배점	점수	배점	점수	배점	점수	점수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	80.12	10	10	30	19.29	40	33.83	10	9	10	7	1
검찰업무정보화	83.62	10	10	30	19.51	40	33.11	10	8	10	10	3
연수원운영	79.84	10	10	30	20.57	40	31.27	10	8	10	10	0
강력범죄등피해자 보호및지원	77.07	10	10	30	19.88	40	28.19	10	7	10	10	2

자료: 법무부, “2020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2021.3.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르면 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되,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미흡사업인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 검찰업무정보화, 연수원운영, 강력범죄등 피해자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였다.

4개 단위사업의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따르면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 사업은 전년(2021년도) 예산 대비 2022년도에 1억 3,600만원 감액요구하고, 검찰업무정보화 사업은 전년 대비 34억 7,600만원, 연수원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6,400만원, 강력범죄등 피해자보호 및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3억 3,700만원을 각각 감액요구한다는 방침이었다.

[2020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계획]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지출구조조정계획		
		'20	'21(A)	'22요구 계획(B)	감액 (B-A)	감액사유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1,205	1,022	911	△111	집행부진사업 사업규모 축소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77	168	167	△1	집행부진사업 사업규모 축소
	기업환경지수 개선	298	283	259	△24	집행부진사업
	계	1,680	1,473	1,337	△136	
검찰업무정보화	검찰업무정보화	30,386	34,191	31,553	△2,638	사업대상 축소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2,538	10,856	10,018	△838	사업대상 축소
	계	42,924	45,047	41,571	△3,476	
연수원 운영	연수원시설 관리 및 운영	4,192	4,675	4,211	△464	사업비 감액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1,422	1,445	1,345	△100	사업비 감액
	계	5,614	6,120	5,556	△564	
강력범죄등 피해자보호 및 지원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3,376	18,013	16,313	△1,700	사업비 감액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지원	4,499	5,122	4,485	△637	
	계	27,875	23,135	20,798	△2,337	
합 계		78,093	75,775	69,262	△6,513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러한 지출구조조정계획과 달리 법무부는 총 9개 세부사업 중 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대비 2022년도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 중 2개 세부사업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따르면 첫째,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사업은 2021년 대비 100만원 감액된 1억 6,700만원을 요구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2021년보다 2,200만원 증가한 1억 9,000만원을 요구하여 1억 6,200만원(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이 편성되었다.

둘째, 검찰업무정보화 사업은 2021년 대비 26억 3,800만원 감액된 315억 5,300만원을 요구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2021년보다 84억 1,500만원 증가한 426억 600만원을 요구하여 327억 7,800만원(전년 대비 14억 1,300만원 감액)이 편성되었다.

셋째,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은 2021년 대비 8억 3,800만원 감액된 100억 1,800만원을 요구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2021년보다 35억 1,700만원 증가한 143억 7,300만원을 요구하여 109억 1,900만원(전년 대비 6,300만원 증액)이 편성되었다.

넷째, 연수원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은 2021년 대비 4억 6,400만원 감액된 42억 1,100만원을 요구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2021년보다 4억 7,300만원 증가한 51억 4,800만원을 요구하여 46억 1,200만원(전년 대비 6,300만원 감액)이 편성되었다.

다섯째, 법무, 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은 2021년 대비 1억원 감액된 13억 4,500만원을 요구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2021년보다 9억 5,700만원 증가한 24억 200만원을 요구하여 17억 4,900만원(전년 대비 3억 400만원 증액)이 편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은 2021년 대비 17억원 감액된 163억 1,300만원을 요구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2021년보다 22억 6,700만원 증가한 202억 8,000만원을 요구하여 177억 9,600만원(전년 대비 2억 1,700만원 감액)이 편성되었다.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사업에 대한 2022년도 요구안 및 2022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22 요구 계획	'22 요구안	'22 예산안 (B)	증감 (B-A)
		'20	'21(A)				
국제 법무 운영 및 외국 법제 연구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1,205	1,022	911	1,004	805	△217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177	168	167	190	162	△6
	기업환경지수개선	298	283	259	275	248	△35
	계	1,680	1,473	1,337	1,469	1,215	△258
검찰 업무 정보화	검찰업무정보화	30,386	34,191	31,553	42,606	32,778	△1,413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2,538	10,856	10,018	14,373	10,919	63
	계	42,924	45,047	41,571	56,979	3,697	△1,350
연수원 운영	연수원시설 관리 및 운영	4,192	4,675	4,211	5,148	4,612	△63
	법무, 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1,422	1,445	1,345	2,402	1,749	304
	계	5,614	6,120	5,556	7,550	6,361	△241
강력 범죄등 피해자보호 및 지원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3,376	18,013	16,313	20,280	17,796	△217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지원	4,499	5,122	4,485	4,620	4,620	△502
	계	27,875	23,135	20,798	24,900	22,416	△719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지출구조조정계획에 포함된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기업환경지수개선 등 3개 사업은 2022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대면회의 등이 어려울 수 있고, 검찰업무정보화 사업의 경우 2021년 화상회의시스템 고도화 사업(6억 6,300만원) 및 기록물관리시스템 남양주지청 설치(1억 7,300만원), 신설청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11억 4,500만원) 완료 등에 따라 2022년에는 예산소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일센터 운영비(1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하였으나, 스마일센터(총괄 포함 17개소)는 센터 개수가 줄어들지 않는 한 운영비 감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사업 성격이나 진행경과를 볼 때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거나 감액할 수 없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처가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였다기보다는 코로나19의 영향, 정보화 구축사업 완료 등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반영시킨 것에 가깝다.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성과중심 예산편성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명시된 제도로서, 평가결과가 예산안 편성과정에 제대로 환류되지 못한다면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미흡사업에 대한 감액 요구를 하는 것으로 법무부 스스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부처 예산 요구단계에서 상당수 미흡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던 것을 보면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예산안 편성과정에 제대로 환류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명시한 감액 사유가 왜 반영할 수 없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소요는 없는지, 증액의 시급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개별사업 분석

1 코로나19 영향 및 사용횟수 감소에 따른 외부 회의장 임차 필요성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1)]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민의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생의 기본법인 민법과 그 밖의 민사법령 제도의 지속적 정비와 효율적 시행으로 국민의 편익을 추구하고 경제 활성화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00만원이 감액된 1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908	1,225	1,225	1,197	△28	△2.3
임차료	55	63	63	63	0	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외부 회의장을 연중 상시 대관하고 있는데, 사용횟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동 사업의 주관부서인 법무심의관실 사용횟수는 2020년 기준 12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3-300

라 2022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부 회의장 임차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22년도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 예산안에 법제개선을 위한 공청회 장소 임차료(750만원)와 법령 개정 관련 회의장 임차료(5,544만원) 등 임차료 6,294만원을 편성하였다.

이 중 법령 개정 관련 회의장 임차료는 서울 서초구 소재 J빌딩 회의장을 연중 상시 대관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법무부가 외부 회의장을 처음 임차한 연도는 2014년이며 최근 6년간 집행(예정포함)한 임차료만 3억 5,952만원에 달한다.

[최근 6년간 서울 서초구 소재 빌딩 임차료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장소	임차료	계약기간
2016	서초동 오퓨런스	월 574만원*12	2016.4.10.~2017.4.9.
2017	서초동 오퓨런스	월 574만원*12	2017.4.10.~2018.4.9.
2018	서초동 J빌딩	월 462만원*12	2018.4.10.~2018.4.9.
2019	서초동 J빌딩	월 462만원*12	2019.4.10.~2020.4.9.
2020	서초동 J빌딩	월 462만원*12	2020.4.10.~2021.4.9.
2021	서초동 J빌딩	월 462만원*12	2021.4.10.~2022.4.9.
합 계		359,520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외부 회의장의 임차 필요성에 대하여 법무부 자체 회의장은 정부과천청사 내 회의실밖에 없어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다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회의를 진행함에 따라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쉬운 장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 소재 법무부 소속기관 회의실은 수용시설(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특성상 외곽에 위치하여 외부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출입이 잦아 이용에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최근 6년간 사업주관 부서인 법무심의관실의 외부 회의장 사용횟수를 보면 2016년 87회에서 2020년 12회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9월말 현재 5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법무심의관실 외부 회의장 사용횟수]

(단위: 회)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월말
법무심의관실	87	40	31	8	12	5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 법무심의관실의 외부 회의장 사용횟수가 저조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여러 용도로 회의장을 예약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외부 회의장의 총 사용횟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도 2016년 108회의 절반 수준인 65회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외부 회의장 총 사용횟수]

(단위: 회)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월말
총 사용횟수	108	68	64	65	53	36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법무부의 설명과는 달리 각 부서에서도 간담회나 공청회 장소를 법무심의관실의 외부 회의장 외에도 별도로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같은 법무실 소관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을 보면, 2020년 법령제·개정위원회 위촉식,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법안 온라인 공청회 등을 위하여 여의도 63컨벤션센터 등 장소 임차료로 총 1,082만원을 집행하였다.

이는 회의장 및 행사장은 각급 교육기관, 훈련시설 등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하도록 하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외부 회의장 상시 대관의 필요성 설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20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은 66.7%에 달하고 있고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with corona)으로의 전환도 구체화고 있다고는 하나, 2022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는 2021년 '기타법무시설개보수 및 확충' 사업을 통하여 구축한 영상 회의실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와 법무부 자체 회의실(소속기관 포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외부 회의장 임차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법무부 소속기관 회의실 현황(본부 회의장 포함)]

기관명	주소	회의실 현황(개)(수용인원: 명)
법무부 본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대회의실 2(각 60, 25), 중회의실 1(17) 실·국본부 회의실 7(각 11~17)
인천공항 서울역출장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	소회의실 1(1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대회의실 1(40), 소회의실 1(15)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소회의실 1(14)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	소회의실 1(10)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대회의실 1(50), 소회의실 1(15)
대검찰청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57	- 본 관(15층): 대회의실 1(320) 중회의실 1(180), 소회의실 1(140) - 별 관(4층) 예그리나홀 1(316) - NDFC(2층) 베리타스홀 1(140)
서울고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대회의실 1(100), 중회의실 1(25), 소회의실 2(각 20)
서울동부지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0	대회의실 1(100), 중회의실 1(21), 부회의실 10(각 15), 화상회의실 1(10)
서울남부지검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 (신정1동 313-1)	대회의실 1(200), 소회의실 1(32), 세미나실 1(23)
서울북부지검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	대회의실 1(326), 중회의실 1(30), 소회의실 1(18)
서울서부지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대회의실 1(200), 중회의실 1(20)
서울동부구치소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대회의실 1(72), 소회의실 2(25, 7)
서울남부구치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	대회의실 1(117), 소회의실 1(17)
서울남부교도소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	대회의실 1(50), 소회의실 1(17)

기관명	주소	회의실 현황(개)(수용인원: 명)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5-3	회의실 1(16)
서울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	대회의실 1(50), 소회의실 1(24)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대회실 1(40)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93	소회의실 1(20)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 강북구 덕릉로 78	대회의실 1(30)

자료: 법무부

2 ‘청년법조인 해외진출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은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사업[1)]의 내역사업으로 청년법조인들에게 국제업무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과 해외인턴파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56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제거래 및 국제 통상법률지원	743	1,022	1,022	805	△217	△21.2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0	6	6	6	0	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설하는 ‘해외진출 아카데미 과정’에 강사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 아카데미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인턴은 2019년 1명에 불과하고 아카데미 수료 여부와 무관한 예비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해외인턴 파견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2-300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O.K. 프로젝트)[2]은 청년법조인들에게 국제업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법조인의 해외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9월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세계한인변호사회(IKAL)[3]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프로그램인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와 '인턴파견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본격 추진되었다.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해외진출 의사를 가진 청년법조인(법조경력 10년 이하)들을 수강생으로 선발하고 국제업무에 정통한 변호사 등을 강사진으로 섭외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 9월말 현재 제6기까지 진행되었으며, 법무부는 동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료, 교육 및 홍보자료 발간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교육기간	수료생
제1기	2014. 9. ~ 2015. 7.	57
제2기	2016. 3. ~ 2016. 6.	70
제3기	2017. 3. ~ 2017. 7.	45
제4기	2018. 3. ~ 2018. 7.	32
제5기	2019. 3. ~ 2019. 6.	36
제6기	2020. 9. ~ 2020. 12.(온라인)	66

자료: 법무부

그런데 연도별 해외인턴 파견현황을 살펴보면,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자 중 사전 영어인터뷰 등을 통해 선발하는 장기 해외인턴은 2015년 7명에서 2019년 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해외인턴 파견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파견자	7	5	3	3	1	코로나19로 중단

자료: 법무부

2) 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Lawyers 프로젝트
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더욱이 동 아카데미 수료 여부와 무관하게 예비법조인(로스쿨 재학생 또는 사법연수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단기 해외인턴 파견'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4] 2019년 기준 해외 파견기관을 보더라도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가 대부분으로 해외기관은 홍콩 변호사협회 단 한 군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동 사업을 통하여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법조인 현황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단기 해외인턴 파견기관 현황]

국가	지역	기관	구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법무법인 지평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
베트남	하노이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세종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
	호치민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세종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
중국	홍콩	홍콩 변호사협회	해외 기관
	상해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지평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
	북경	법무법인 태평양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
한국	서울	UNHCR 한국대표부	국내 국제기구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인턴 선발 이후 취업 등 후속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동 사업목적이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 장려임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015년 동 사업에서 약 1,700만원이 소요되어 구축된 O.K.프로젝트 홈페이지[5]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은 당초 사업목적인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이 아닌 '청년예비법조인의 단기 해외인턴 파견'에 그치고 있으며,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설하는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강사료, 홍보자료 발간비를 지원

4) 단기 해외인턴 파견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파견자	47	46	38	38	46	코로나19로 중단

자료: 법무부

5) 동 사업을 통하여 2015년 O.K.프로젝트 홈페이지(okproject.or.kr) 제작에 약 1,700만원이 집행되었다.

하는 데 불과한 실정이므로 동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9월말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1)]	예산액	집행액
강사료	3,600	4,200	3,600	4,200	3,600	0	3,600	0
교육 및 홍보자료 발간	2,000	317	2,000	396	2,000	0	2,000	1,093
합계	5,600	4,517	5,600	4,596	5,600	0	5,600	1,093

주: 1) 2020년 제6기 아카데미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
자료: 법무부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을 인권활동 프로그램의 법률구조 사업에서 법무활동 프로그램의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은 법률구조 사업[1)]의 내역사업으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 법률구조 사업에 통합되어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7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법률구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결산	2021[1)]		2022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법률구조	52,519	53,516	53,516	62,406	8,886	16.6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 사업비	610	753	753	753	0	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주택 및 상거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6개소)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 5월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인권활동 프로그램의 법률구조 사업에서 법무활동 프로그램의 별도 사업으로 분리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첫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 해결'이 목적인 반면 법률구조 사업은 소외 계층의 '법적 조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상이하다.

법률구조 사업은 「법률구조법」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송대리,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법적 조력을 지원하는 사업인 반면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행주체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거법령과 수혜대상 등이 상이하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과 법률구조 사업의 비교]

구 분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	법률구조 사업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구조법」
목적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조정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대상	임대인 및 임차인	사회적·경제적 약자
방식	양 당사자 중재	소송대리를 중심으로 일방 당사자 지원
범위	민사	민사·형사

자료: 법무부

둘째, 사업의 관리·감독 측면에서 법령개정 및 실적관리 등은 법무실에서 담당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은 인권국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임대차 분쟁조정 성립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사업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의 근거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법령개정과 실적관리 등의 사무는 법무실에서 담당하고 예산 및 집행은 인권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임대차 분쟁조정 수혜자 수' 및 '임대차 조정성립 사건의 조정처리 소요기간' 2개로 설정하고 있는데, '임대차 분쟁조정 수혜자 수'는 조정성립 건수가 아닌 분쟁조정 접수건수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 실적도 2,515건

에서 2,018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임대차 조정성립 사건의 조정처리 소요기간'도 2019년 45.6일에서 2020년 46.1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구조 사업 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 관련 성과지표 현황]

(단위: %)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임대차 분쟁조정 수혜자 수 (단위 : 명)	목표	7,305	3,000	5,100
	실적	2,515	2,192	2,018
	달성도	34.4	73.1	39.6
임대차 조정성립 사건의 조정처리 소요기간 (단위 : 일)	목표	신규	32	32
	실적	신규	45.6	46.1
	달성도	-	57.5	55.9

자료: 법무부

더욱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목적이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 해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접수한 사건 대비 실제로 조정이 성립한 비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임대차의 경우 조정성립 비율이 2017년 24.4%에서 2020년 15.5%로 하락하였으며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도 2019년 15%에서 2020년 12.2%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상세]

(단위: 건, 구수[1] 제외)

구 분		접수	조정 미개시[2]			조정 개시			
			각하	화해 취하	기타[3]	조정 성립	불성립	진행중[4]	기타[5]
주택 임대차	2017	1,088	277	142	109	266	37	196	61
	2018	2,515	758	460	301	569	56	170	201
	2019	2,192	867	346	211	389	37	119	223
	2020	1,536	704	211	103	238	26	163	91
	2021.9월말	1,198	0	0	0	194	68	105	831
상가 건물 임대차	2019	499	246	50	35	75	14	45	34
	2020	482	274	46	24	59	11	25	43
	2021.9월말	397	0	0	0	51	24	278	44

주: 1)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건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12.10.)에 따른 자동조정개시제도 도입으로 2021년의 경우 조정미개시 사건이 없음
3) 이송 또는 취하된 사건
4)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을 위한 신청서부본 송달 진행중인 사건 및 조정개시 사건
5) 미조정결정, 각하, 취하 등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을 인권활동 프로그램의 법률구조 사업에서 법무활동 프로그램의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생활법률지식서비스「버비」: 법교육 목적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차별화 방안 모색 필요

가. 현 황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사업[1)]은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법교육 출장 강연 등 법교육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체험형 법교육 시설인 솔로몬 로파크(Solomon Law Park)의 전시물 교체, 시설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9억 6,700만원이 증액된 84억 3,000만원이다.

[2022년도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3,925	4,463	4,463	8,430	3,967	88.9
관리용역비	113	129	129	129	0	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생활법률지식 대화서비스인 버비의 챗봇(Chatbot)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24년까지 구축 예정인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와 법률 관련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버비의 생활법률지식 카드뉴스는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의 '카드뉴스형 생활법령'과 서비스 내용이 중복되므로, 법교육 목적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634-304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인 '버비'는 2016년 과학기술정통부의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선정되어 서비스가 구축되었다. 동 서비스는 ① 생활법률지식 대화서비스 챗봇(Chatbot) 서비스, ② 생활법률지식(부동산임대차보호법, 임금, 해고, 상속 4개 분야) 카드뉴스, 오디오 카툰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③ 생활법률 문답지식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4년간 버비에 소요된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약 3,900만원, 2019년 3,400만원, 2020년에는 응용프로그램 관리용역비의 증액 등으로 1억 1,300만원, 2021년에는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UI/UX 개선, 챗봇 엔진 업그레이드 추진 등으로 1억 1.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22년에는 2021년과 동일하게 1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최근 4년간 버비 관련 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비 고
2018	42,000	38,867	
2019	42,000	34,032	
2020	129,000	113,140	응용프로그램 관리용역비 8,700만원 증액
2021	129,000	116,100	

자료: 법무부

한편 챗봇은 문자로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버비의 생활법률지식 대화서비스인 챗봇 서비스의 경우 주택, 상가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분야 판례, 사례 등을 기반으로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서비스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하거나 카카오채널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챗봇 서비스 활용 사례]

질문 :	**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버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 상속재산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상속간주재산도 포함됩니다.
질문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버비'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징계 등 포함) 등을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이용 및 카카오채널을 통한 대화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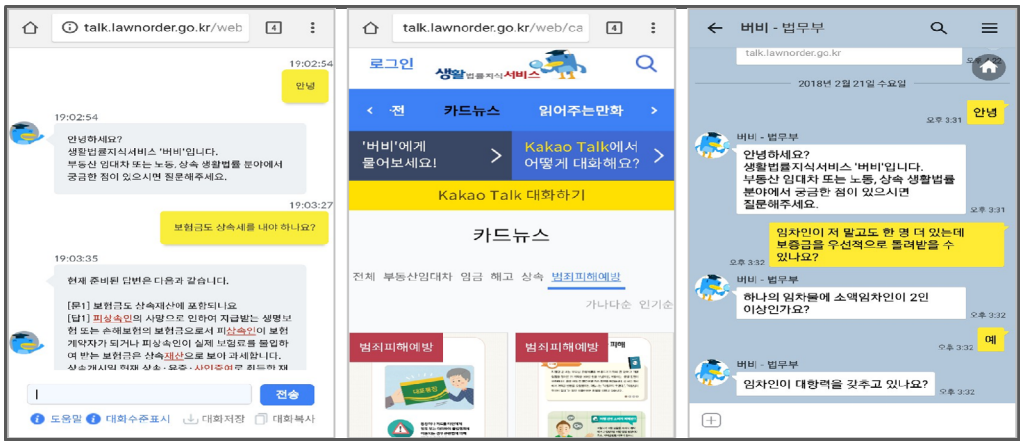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그런데 버비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에 대한 챗봇 서비스'는 챗봇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법률상식을 전달하는 서비스라고는 하나, 예를 들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이 제공되는 등 법률상식이 아닌 법률상담서비스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챗봇 서비스 상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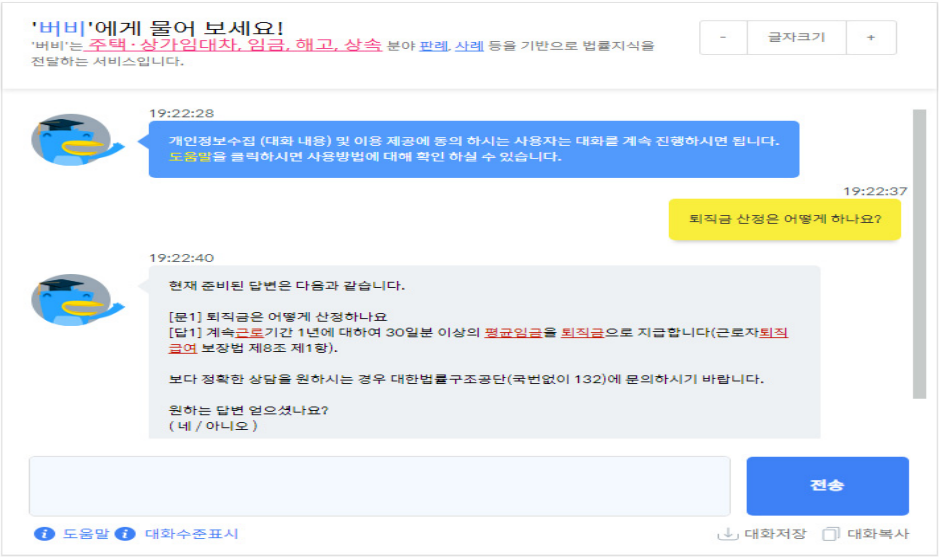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는 법률구조 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구축을 위한 2차년도 예산 17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24시간 365일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4억 5,700만원에 달한다.

동 서비스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하면 4단계인 2024년에는 대국민 인공지능 법률상담 질의·응답시스템인 챗봇 및 콜봇(Callbot)[2]이 구축될 예정으로, 현행 버비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에 대한 챗봇 서비스’와 법률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되 구체적인 법률상담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2) 음성인식 솔루션(STT)과 음성합성 솔루션(TTS)을 결합한 기술로 문자를 입력하는 기존 챗봇과 달리 음성으로 편리하게 상담이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단계별 추진]

연 도	구 분	내 역	비 고
1단계 (2021년)	법률상담 분류	• 법률상담 내용별 분류 세분화 실시	'21.08. 완료
	녹취시스템 구축 음성인식 AI 엔진도입 빅데이터 수집	• 132콜센터 전화상담 내역 녹취 • 음성인식 인공지능 엔진 도입 및 학습을 통한 인식율 향상 • 실시간 상담내용 문자화 • 법률상담 및 법률서면 빅데이터 수집	
2단계 (2022년)	인공지능 엔진 도입, 인프라 구축	• H/W, S/W 인프라 구축 • 문자분석 인공지능 구축 • 언어모델 인공지능 엔진 구축 및 학습 • 시나리오기반 챗봇 구축 • 상담 및 구조 학습데이터 생성·보완	• 간편서비스시스템 (챗봇) 방문(화상) 상담예약 등
3단계 (2023년)	내부 업무 도우미 서비스 구축	• 내부 상담도우미시스템 구축 상담사에게 실시간 법률상담 답변자료 제공 • 내부 구조도우미시스템 구축 소장, 판결문, 법령정보, 대법원의 판례 등 자료 제공 • 상담 및 구조도우미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인공지능 학습 및 검증·보완 • 상담 및 구조 학습데이터 생성·보완	• 상담업무도우미 답변보조 및 학습 시스템 • 구조업무도우미 구조보조 및 학습 시스템
4단계 (2024년)	AI 법률상담 질의·응답 시스템 등 대국민서비스	• 챗봇, 콜봇 구축 • 법률상담 Q&A 서비스 구축 채팅, 전화 등 응대를 인공지능이 대행 •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 AI법률정보 제공서비스를 통한 나홀로 소송지원 • 상담 및 구조 학습데이터 생성·보완	• 대국민 AI 법률상담 질의·응답 시스템 (챗봇, 콜봇) • AI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한 나홀로 소송 지원

자료: 법무부

또한 버비의 생활법률지식 카드뉴스는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카드뉴스형 생활법령과 서비스 내용이 중복되는데, 버비의 경우 부동산임대차보호법, 임금, 해고, 상속 등 4개 분야에 한정되는데 비해 법제처는 가정법률, 아동·청소년·교육,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사업, 창업 등 18개 분야에 걸쳐 보다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버비의 생활법률지식 카드뉴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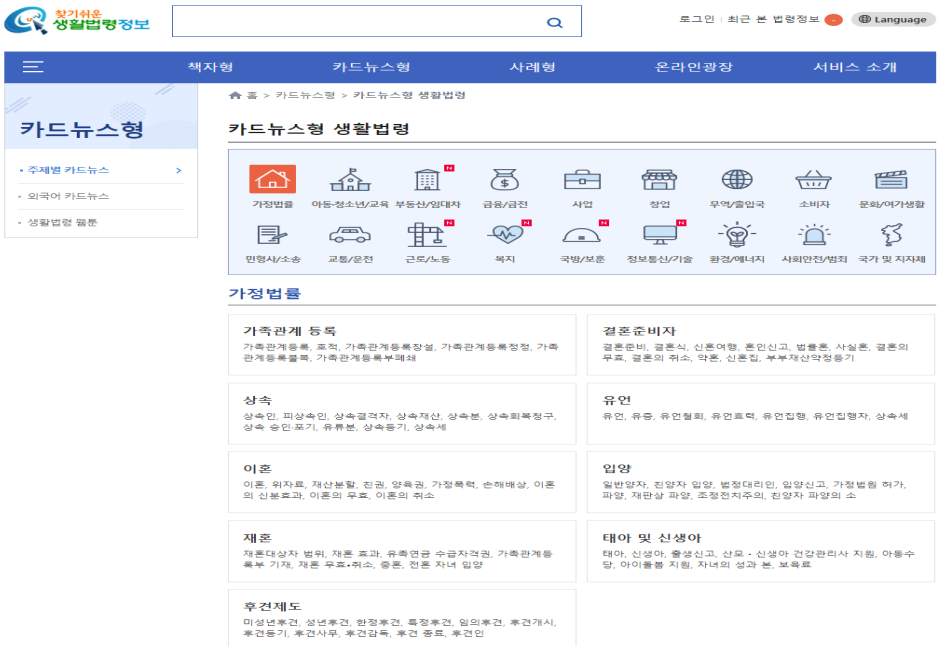

법무부는 버비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에 대한 챗봇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방문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법률상담서비스로 오인하는 부분이 있어 2021년 버비의 메인화면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법률지식서비스 목적을 명확히 하고, 향후 사용자의 질의에 적합한 법교육포털 '법사랑사이버랜드'의 콘텐츠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처별로 법률정보 제공 등 유사한 목적의 서비스를 각각 제공할 경우 관련 예산이 중복 집행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법무부는 동 사업의 목적인 '법 교육'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버비」의 서비스 차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5 형사조정제도 성립률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사업[1)]은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및 소년·의료·명예훼손 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피의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실시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억 6,200만원 감액된 4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형사조정을 위한 피해회복 지원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계획[1)]		2022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4,268	5,122	5,122	4,620	△502	△9.8

주: 1)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형사조정제도는 2016년 이후 형사조정 성립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형사조정 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성립률이 저조한 검찰청 위주로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35-301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2]에 따라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피해자·피의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형사사법의 비용 절감 및 사적 영역에서의 분쟁 해결 능력을 활용하려는 사업이다.

동 법 제42조에서는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하는 형사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대검찰청예규인 「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 제3조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등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형사조정 제도는 피해자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사관계의 형사 사건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

---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3)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 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⑦ 형사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
제3조 (형사조정 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 부할 수 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4]에서도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형사조정제도 집행절차]

① 사건 회부	→	② 조정	→	③ 결정문 등 자료 송부	→	④ 처분
검사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 동의를 얻어 형사조정위원회에 사건 회부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참여 하에 조정 진행		조정이 종료되면 검사에게 형사조정 결정문 등 자료 일체 송부		검사는 조정결과를 고려하여 처분

자료: 법무부

그런데 최근 5년간 형사조정제도 성립률을 살펴보면, 2016년 60%에서 2020년 51.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형사조정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뢰건수	111,012	118,113	117,014	118,311	77,514
성립건수	57,102	59,424	57,061	56,946	34,296
불성립건수	33,138	37,661	38,401	40,277	29,399
진행중	15,776	17,493	18,035	17,881	10,835
성립률	**60.0**	**58.4**	**57.5**	**56.7**	**51.6**

자료: 법무부

각 검찰청별 형사조정 성립률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남원지청이 76.7%로 가장 높고 영월지청이 31.3%로 가장 낮았으며, 처리건수가 많은 10개 검찰청을 비교해 보면 인천지검이 가장 높은 55.6%인데 반해 가장 낮은 대구지검의 경우 43.8%로 나타나 그 편차가 약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조정 성립률이 가장 높은 검찰청 및 가장 낮은 검찰청 현황]

(단위: 건, %)

검찰청	의뢰건수	처리건수	성립건수	성립률
총계(59개청)	77,514	66,425	34,296	51.6%
남원지청	111	73	56	76.7%
영월지청	92	67	21	31.3%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0년 형사조정 처리건수가 많은 검찰청 별 성립률 현황]

(단위: 건, %)

연번	검찰청	의뢰건수	처리건수	성립건수	성립률
1	수원지검	6,072	5,299	2,706	51.1
2	의정부지검	3,813	3,280	1,756	53.5
3	서울중앙지검	3,849	3,258	1,624	49.8
4	**인천지검**	**2,977**	**2,646**	**1,471**	**55.6**
5	서울동부지검	2,629	2,561	1,270	49.6
6	서울남부지검	3,048	2,560	1,304	50.9
7	부산지검	2,758	2,404	1,190	49.5
8	안산지청	2,612	2,331	1,230	52.8
9	서울북부지검	2,614	2,322	1,372	59.1
10	**대구지검**	**2,834**	**2,273**	**996**	**43.8**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형사조정 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형사조정 성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성립률이 저조한 검찰청 위주로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근거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은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에 따라 현재 법무부·검찰·경찰·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이용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확대, 대국민서비스 전면 개편, 빅데이터·지능형 서비스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22억 8,900만원 증액된 619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차세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	19,659	19,659	61,948	42,289	215.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2021년 5월 착수)과는 달리 2021년 9월말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법무부는 근거 법률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038-301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2]) 구축 사업은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에 따라 누후화된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 기반의 사건처리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1,584억 8,500만원)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1,372억 7,100만원) 등 총 2,957억 5,600만원이 책정되었다.

현재 법무부, 법원, 검찰, 경찰, 해양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각 기관의 형사사건처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형사사건기록의 원본은 종이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어 사건의 송치 및 기소 시 데이터는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있으나 종이기록은 각 기관으로 별도로 송부하는 등 완전한 전자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종이 기록에 의존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완전 전자화를 구현할 목적으로 2021년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으로, 동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전자화하여 사건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도 모바일서비스, 원격화상조사, 전자적 기록 열람·출력 등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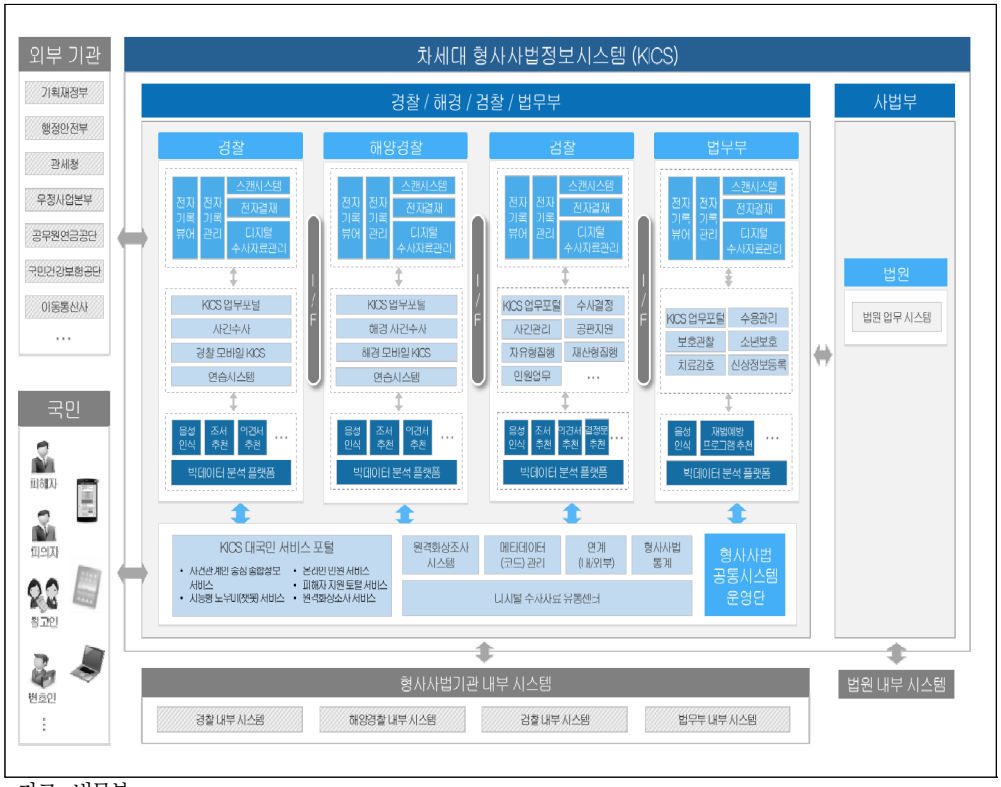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한편 법무부는 2021년에는 차세대 KICS 구축을 위한 분석·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 19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차년도인 2022년에는 차세대 KICS 개발 및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대비 422억 8,900만원 증액된 61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안
차세대 KICS 구축	◦ 일반연구비: 18,022백만원 가. SW개발(기능점수 방식) 31,075FP×580천원=18,022백만원	◦ 일반연구비: 10,208백만원 가. SW개발(기능점수 방식) 14,010FP×580천원=8,128백만원 나. SW개발(투입공수 방식) 178MM×11,688CJSDNJS=2,080백만원
		◦ 자산취득비: 49,449백만원 가. 상용SW 구입 2,684식×11,033천원=29,611백만원 나. HW 구입 328식×60,482천원=19,838백만원
차세대 KICS 구축 감리	◦ 일반연구비: 139백만원 가. 1차년도 감리비 139백만원	◦ 일반연구비: 861백만원 가. 2차년도 감리비 861백만원
차세대 KICS 구축 PMO	◦ 일반연구비: 1,173백만원 가. 1차년도 PMO 1,173백만원	◦ 일반연구비: 797백만원 가. 2차년도 PMO 797백만원
조달수수료		◦ 일반수용비: 313백만원 가. 조달수수료 313백만원 (1차년도 조달수수료 75백만원+2차년도 조달수수료 238백만원)
추진단 운영	◦ 일반수용비: 168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 30백만원 ◦ 특근매식비: 29백만원 ◦ 임차료: 94백만원 ◦ 공사비: 5백만원	◦ 일반수용비: 168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 30백만원 ◦ 특근매식비: 29백만원 ◦ 임차료: 94백만원
합 계	19,659	61,948

자료: 법무부

그런데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말 현재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을 위한 조달청 입찰공고('21.9. 8~10.20) 중으로, 차세대 KICS 구축, 감리, PMO 사업자 선정 및 1차년도 계약체결은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초 5월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발주가 순연되었다고 설명한다.

[차세대 KICS 구축 사업 추진 경과]

구 분	추진 경과
’20. 9	차세대 KICS 구축 준비 TF 구성
’20. 8~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20. 8.) 및 국회 제출(’21. 3.)
’21.1.~7.	총 사업비 신규등록(1.19 완료) 및 기획재정부와 발주 전 총사업비 협의 진행(7.28 완료)
’2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SW 사업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인정 심사
’21.4.~5.	차세대 KICS 구축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 구성
’21.6.~7.	조달청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협의 진행(7.12. 완료)
’21.8.	과업심의위원회 과업 심의(8.12.)
’21.8.~10.	조달청 사전규격 공고(8.26~9.2.) 및 입찰공고(9.8.~10.20.)
’21.9.	감리 및 PMO 사업 조달계약 의뢰(9.16.)
’21.9.28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회 의결
’21.11.	차세대 KICS 구축, 감리 및 PMO 사업자 선정 및 1차년도 계약 체결(예상)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법무부의 차세대 KICS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1차년도 사업은 체결일로부터 8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빨라야 2022년 6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차년도 사업(전년차 종료일로부터 12개월)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KICS 연차별 주요 사업 내용]

1차년도 (체결일~8개월)	2차년도 (전년차 종료일~12개월)	3차년도 (전년차 종료일~16개월)
• 차세대 KICS 분석·설계 • 클라우드 인프라 구조 설계 • 개발환경 구축	• 차세대 KICS 개발(1차) •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1차)	• 차세대 KICS 개발(2차) 및 시험 •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2차)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시범운영 및 서비스 개통

차세대 KICS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그 근거 법률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021년 9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년 후인 2024년 10월 20일 시행되게 되었다.

물론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각각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법무부는 가능한 한 동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차세대 KICS 구축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본부인건비(총액): 공익법무관 신규 편입인원 확보를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 강화 필요

가. 현 황

본부인건비(총액) 사업[1]은 법무부 본부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2,000만원 감액된 1,80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본부인건비(총액)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본부인건비(총액)	168,188	181,448	181,448	180,728	△720	△0.4
기타직보수	10,695	8,962	8,962	6,390	△2,572	△28.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공익법무관은 2021년 9월말 현재 총 142명이고 2022년 8월 1일자로 60명이 전역 예정이므로 법무부는 2022년 공익법무관 신규 편입인원 확보를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4년간 공익법무관 규모를 살펴보면, 신규 임용자가 2017년 178명에서 2021년 28명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공익법무관 숫자도 2017년 583명에서 2021년 9월말 기준 14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011-100

[최근 5년간 공익법무관 현황(매년 8월 1일 기준)]

(단위: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역	217	200	205	178	86	60
신규 임용	178	86	60	54	28	-
현원	583	469	324	200	142	-

자료: 법무부

이처럼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자가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법무사관 후보생 편입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군 복무기간의 단축 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병역의무자가 늘어나면서 법무사관 후보생 편입인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2)]

[최근 5년간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법무사관후보생	198(5)	163(3)	139	141	150

주: ( )안은 사법연수원 출신 인원임
자료: 병무청

한편 법무부는 2022년도 본부인건비(총액) 사업 기타직 보수에 공익법무관 162명에 대한 보수(봉급, 정근수당,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로 약 55억 170만원을 편성하였다.

2)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인원 중 국방부에서 법무장교를 우선 선발한 후 잔여 인원을 보충역(공익법무관)으로 분류한다.

[2022년도 기타직보수 중 공익법무관 보수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근거	예산안
봉급		1,997,500원*162명*12개월*1.0162	3,946,047
정근수당		1,997,500원*162명*1개월*1.0162	36,172
정액 수당	가족수당	40,000원*40명*12개월	19,200
	법무활동 장려수당	250,000원*162명*12개월	486,000
	공익법무관수당	160,436원*162명*12개월*1.0162	316,940
초과근무수당		9,579원*162명*12개월*16시간*1,0162	302,772
명절휴가비		1,997,500*162명*2*0.60*1,0162	394,605
합 계			5,501,736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2021년 9월말 기준 전체 공익법무관 숫자는 142명이고 2022년 8월 1일 60명이 전역할 예정이며, 최근 신규임용자 감소 추세에 비추어 볼 때 2022년에도 신규임용자 수가 전역자 수보다 많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군사법원법」 개정('22.7.1. 시행예정)[3]으로 군법무관 인력 감축 및 조직개편이 예상되어 법무사관 후보생 중 군법무관 선발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2022년도에 총 100명의 공익법무관이 신규편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병무청 측에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법무부의 공익법무관 요청인원 대비 신규 편입인원 비율이 평균 32.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신규 편입인원 확보를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3)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고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 · 제1지역군사법원 · 제2지역군사법원 · 제3지역군사법원 · 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4년간 공익법무관 요청인원 대비 편입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법무부 요청인원(A)	편입인원			
		계(B)	% (B/A)	분류	지원[1]
2021년	150	28	18.7	5	23
2020년	200	54	27.0	43	11
2019년	130	60	46.2	54	7
2018년	219	86	39.3	83	3

주: 1) 병역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원(편입) 인원
자료: 병무청

법제처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법제처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법제처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계상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435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3,100만원(6.9%) 증가하였다.

[2022년도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8,417	40,737	40,737	43,568	2,831	6.9

주: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법제처

한편, 법제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2년도 법제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하였고, ② 「행정기본법」이 제정('21.3.23.)됨에 따라, 개별 행정법령 정비, 입법영향분석 실시 등 입법 후속조치 실행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

2022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제처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9개 분야 30개 법령(2021년 4개 분야 12개 법령)에 대해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나, 국민 만족도 조사 후 개선점을 보완하여 개발대상 법령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콘텐츠의 탑재·수정을 위한 관리시스템에 개별 콘텐츠 만족도 조사를 위한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므로 콘텐츠 만족도 설문 조사를 위한 일반용역비는 전액 삭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일상용어로 법령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능형 규제법령검색시스템인 '규제백과사전'과 기능이 일부 유사하므로, 법제처는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인공지능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법제처의 2022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2022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법령정보제공, 행정법제 혁신 등이 있다.

① 법령정보제공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쉬운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확대 및 시스템 구축 예산 등이 반영되었고, ② 행정법제 혁신 사업은 개별행정법령 정비,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연구비 예산 등이 증액되었다.

[법제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1[1]		2022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법령정보제공	1,925	1,925	2,516	591	30.7
	행정법제 혁신	300	300	470	170	56.7

주: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주요 증액사업은 2021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법제처

II 개별 사업 분석

1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국민 만족도 조사 후 개발대상 법령 확대 검토 필요

가. 현 황

법령정보제공 사업[1)]의 내역사업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법령 중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사진·절차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제처는 2022년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의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7억 3,900만원을 증액한 1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법령정보제공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법령정보제공	1,394	1,925	1,925	2,516	591	30.7
한눈에 보는 법령 정보제공	-	279	279	1,018	739	264.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법제처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

나. 분석의견

법제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로 2021년부터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7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제처는 2022년 9개 분야 30개 법령(2021년 4개 분야 12개 법령)에 대해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나 국민 만족도 조사 후 개선점을 보완하여 개발대상 법령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내에 검색되는 법령 중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정보를 그림·사진·표 등을 활용하여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구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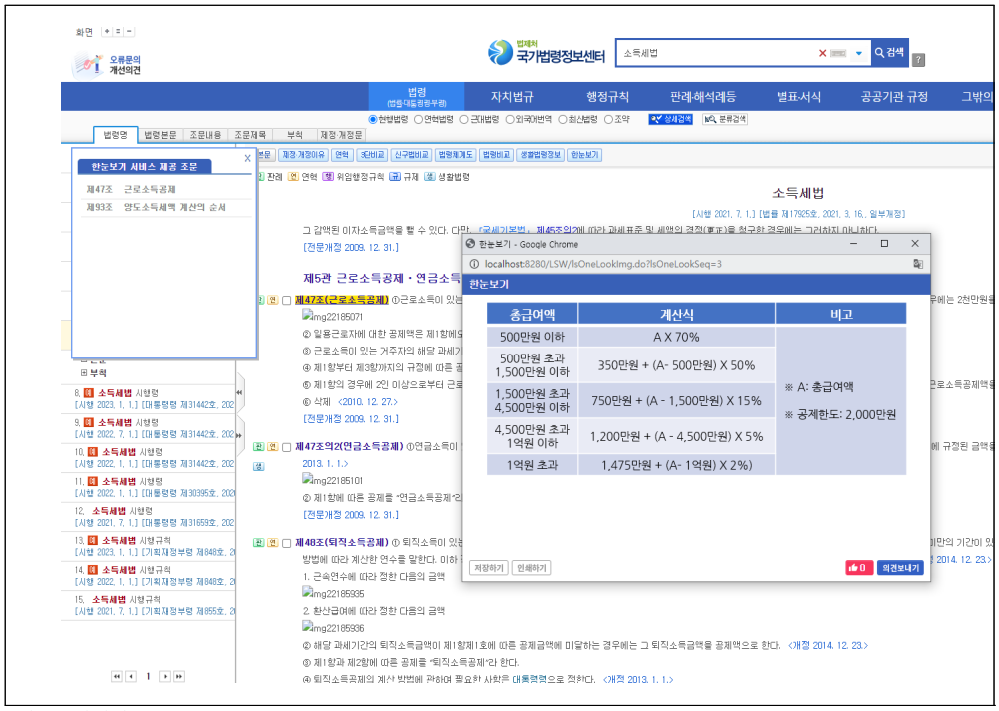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 신규 편성 시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 1년차(2021년)에는 12개 법령〔4개 분야×(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선정하여 어려운 용어 등을 발굴한 후 이를 콘텐츠로 개발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사업 2년차(2022년)까지 정보화예산을 활용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탑재·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올해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개발된 콘텐츠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범 탑재 후 국민 만족도 조사는 빠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1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사업의 추진현황]

구 분	추진현황	
	건축법령, 도로교통법령 (위탁개발)	소득세법령, 고용보험법령 (법제처 자체 개발)
대상법령 선정	건축법령(1.19) 도로교통법령(1.28)	소득세법령(1.7) 고용보험법령(1.20)
책임연구원 채용공고 및 계약	책임연구원 1명 채용(3. 29.)	
법제처 콘텐츠 개발대상 용어 및 조문 선별		3.29.~5.31.
용역수행자 공고 및 선정	3.23. ~ 4.6.	
용역업체 콘텐츠 개발대상 용어 및 조문 선별	건축법(4.30~6.13) 도로교통법(5.3~6.16)	
콘텐츠 관련부처 1차 검토	7.1.~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용역 수행기관이 실시)	소득세법(6.9.~8.10) 고용보험법(6.3.~8.10)
콘텐츠 전문가자문단 2차 감수	10월 중 예정	소득세법(9.3.~10월초) 고용보험법(9.6.~10월초)
콘텐츠 확정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시범탑재	10~11월 예정	
관련부처, 일반국민 등 피드백	관련부처 확인(11월) 및 일반국민 피드백 (11월~1월) 예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콘텐츠 최종 탑재	12월 초 예정	

자료: 법제처

당초 법제처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2021~2022년) 국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동 사업의 개선점 등을 분석한 후 2023년부터 콘텐츠 개발 확대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예산 등을 추가로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올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제처는 콘텐츠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관리자 툴'을 통한 손쉬운 탑재가 불가능하여 별도의 관리시스템 구축 없이는 개발된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시] 위탁용역업체가 개발한 콘텐츠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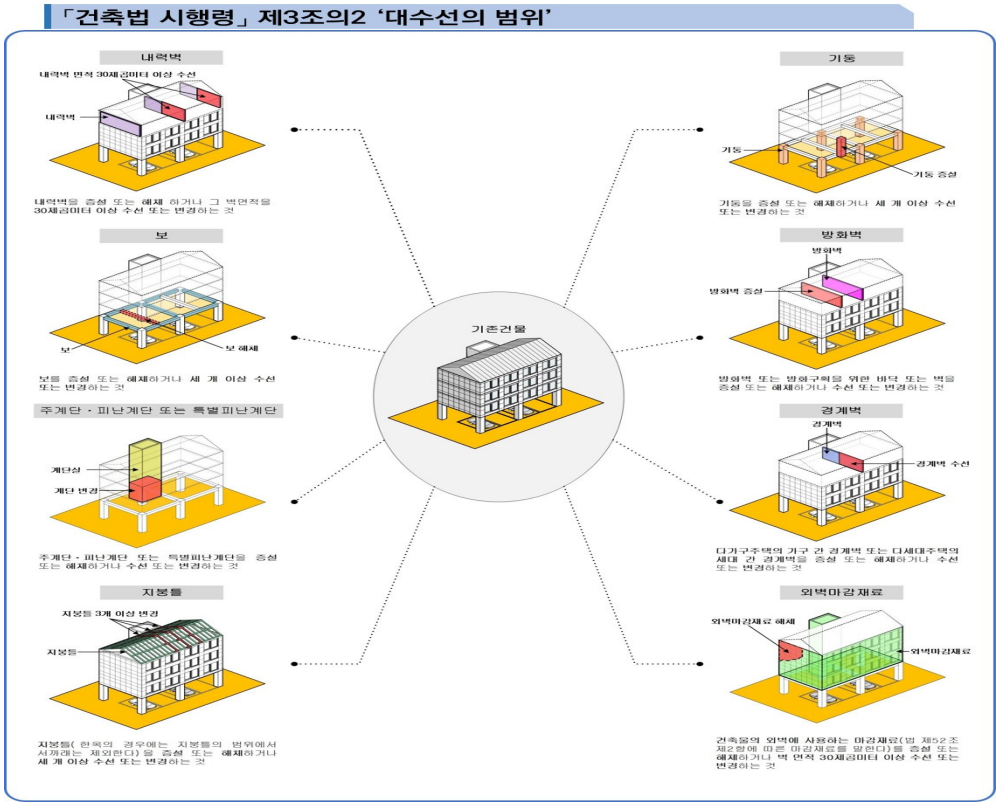

자료: 법제처

이에 2022년도 예산안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전담인력 증원(1명)에 따른 인건비와 더불어 콘텐츠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법령 콘텐츠를 보다 확대 제공할 필요

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일반용역비를 전년 대비 1억 3,814만원 증액한 3억 628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법제처는 9개 분야 94개 법령 중에서 부처 협의를 통하여 30개의 대상법령(12개 법령 자체개발, 18개 법령 위탁개발 예정)을 내년 1월에 최종 선정을 할 계획으로, 대상법령 중 위탁개발 대상법령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30개 법령 후보군: 9개 분야 94개 법령]

분야	조세	부동산	노동	안전	계약	국토 교통	건설	농림 수산	기타
법령 수	9개	18개	9개	11개	7개	13개	6개	9개	12개

자료: 법제처

더욱이 전담인력 1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총 4명의 인력(법제처 2명, 전담인력 2명)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은 법령에 대해 콘텐츠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개발된 콘텐츠 현행화 작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며, 개발된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 후 '한눈보기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도 아직 실시하지 않은 단계에서 개발대상 법령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도 콘텐츠 개발대상 법령의 적정 규모를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일반수용비 및 일반용역비 예산안도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구 분	2022년 예산안
일반수용비 (210-01)	· 법령별 주요용어·체계 자문료 200,000원*30개 법령* 5건=30,000천원 · 전문가자문단 검토 및 출석 사례금 150,000원*50명=7,500천원 · 사무용품 및 회의 준비물 구입 등 기타경비 4,092천원
일반용역비 (210-14)	· 콘텐츠 라이센스 취득대행 및 그래픽 디자인 위탁: 306,275천원 1) 콘텐츠 개발인력 3,641,000원*6명*9월*1.1=216,275천원 2) 그래픽 등 라이센스 취득 및 콘텐츠 개발 30개 법령*3,000,000원=90,000천원 · 온라인 홍보 및 광고대행: 10,000천원 · 콘텐츠 만족도 설문조사: 6,000천원

자료: 법제처

둘째, 법제처는 콘텐츠의 탑재·수정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동 관리시스템에 개별 콘텐츠 만족도 조사를 위한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므로 콘텐츠 만족도 설문 조사를 위한 일반용역비(600만원)는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정보' 팝업 서비스는 인용되는 다른 법령 정보(텍스트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나, '한눈보기' 콘텐츠 탑재는 기존 관리자 툴을 통한 손쉬운 탑재가 아닌 컴퓨터 웹 언어(HTML) 직접 입력을 통해 링크와 창을 생성하고 링크를 통해서 불러오는 이미지 파일도 별도로 탑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손쉽게 콘텐츠를 탑재·수정하고 제공하는 콘텐츠 이력(연혁) 관리 및 현행화 등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2022년에 조기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제처는 동 관리시스템에 개별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의견보내기 기능 등을 구현할 예정이므로, 콘텐츠 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한 일반용역비 600만원은 전액 삭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견수렴 기능 구현 화면]

2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인공지능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1)]의 내역사업인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화기술의 적극적인 반영과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춘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23억 2,2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2년도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법제업무정보화추진	8,823	7,051	7,051	8,801	1,750	24.8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	-	-	2,322	2,322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일상용어로 법령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능형 규제법령검색시스템인 '규제백과사전'과 기능이 일부 유사하므로, 법제처는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인공지능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3-500

법제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법령정보의 민간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용어'를 통한 법령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안을 2022년 신규로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92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2] 법제처에 따르면 ① 법령정보 지식베이스 구축('22년~'26년), ② 인공지능 기반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23년~'25년), ③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22년~25년), ④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강화('23년~'24년) 등으로 단계별로 구축될 예정이다.

2) 연도별 구축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2,322	3,712	2,419	370	377	9,200

[단계별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계획]

① ('22년~'26년) 법령정보 지식베이스 구축

- 생활용어와 법령용어, 용어간 관계, 용어와 법령 내용과의 관계 등 지능형 검색의 기반이 되는 법령정보 지식베이스 구축

② ('23년~'25년) 인공지능 기반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 법령 검색 정확도 향상과 입력 키워드의 형태소 분석을 통해 자동완성 및 교정, 연관검색 기능 제공방안 마련
-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으로 자연어 처리 기반의 문장구분 검색과 추론과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AI) 검색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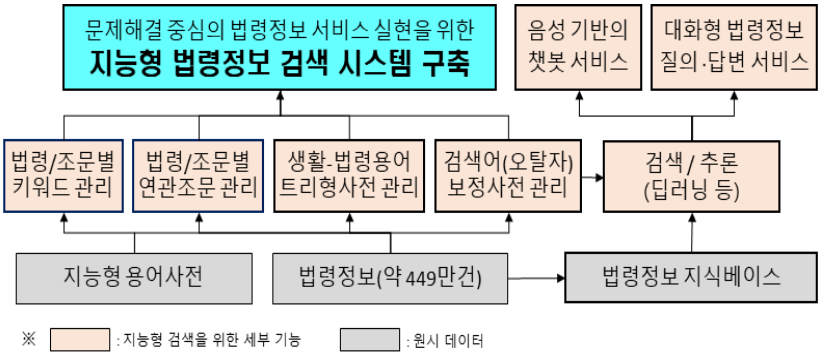

③ ('22년~'25년)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생활용어와 법령용어간 관계정보, 법령간 연계정보 등 법령정보 지식베이스 공개
- 민간기업의 리걸테크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활용 체계를 개편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④ ('23년~'24년)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이용자 특성 및 사용환경을 고려한 화면(UI/UX) 개편과 이용자가 원하는 대상을 최적의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검색방법 개발
- DB 관리·활용 현황, 검색 패턴 등 다차원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관리 시스템 개발로 사용자 요구 분석 및 개발 지원

자료: 법제처

현행 국가법령정보서비스는 일상용어와 법령용어가 상이하고,[3] 관련 정보가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일반 국민의 경우 원하는 법령정보 검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고, 특히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동 서비스 이용 자체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일상용어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스피커[4]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민간기업의 리걸테크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월 지능형 규제법령검색시스템인 '규제백과사전'을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에 구축하였는데, 이 시스템 또한 인공지능에 기반한 법령제공 서비스이며 법제처가 구축하려고 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법령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의 검색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동 시스템은 '2020년 규제자유특구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과업에 포함되어 구축됨에 따라 별도로 소요예산을 산출할 수는 없으나 규제자유특구 관리시스템 구축에 총 10억 8,1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매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도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법제처의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일상용어와 법령용어 간의 관계정보를 법령정보지식베이스로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5] 일상용어로 규제 관련 법령 규정만을 검색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백과사전'과 차이점은 있다고 보인다.

---

3)

예시 1) 일상용어인 '아파트 구입시 세금'이라는 문구와 법령용어인 '부동산,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연결
예시 2) 일상용어인 '오토바이'와 법령용어인 '이륜자동차'를 연결

4) 카카오 AI, SKT NUGU, NAVER Clova 등

5) 예를 들어 '반려견의 범위'를 검색할 경우 관련 조문인 「동물보호법」 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를 검토하여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검색결과로 제공

그러나, 부처별로 각각 인공지능에 기반한 특정 분야별 법령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현행화 등 유지보수 예산도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만큼 향후 법제처는 각 부처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제공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새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법령제공서비스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계상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181억 1,4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81억 1,400만원(순증) 증가하였다.

[2022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	-	-	18,114	18,114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2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축, 관련 시스템을 개발을 위한 정보화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수사 활동에 대한 수사활동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

2022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정한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형사보상금을 편성하였는데,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을 감안할 때 2022년 집행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며, 수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 수당도 개최횟수 등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개최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형사수사 및 형사소송에서 디지털증거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증거의 원본성 및 무결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조속히 디지털증거의 보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2년도 사업은 모두 신규 사업이며, 2022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없다.

①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고, ②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사업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축,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다.

③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수사 활동에 대한 수사활동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한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사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관 운영을 위한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가 각각 편성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1[1]		2022[2]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개)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정보화)	-	-	1,887	1,887	순증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정보화)	-	-	1,305	1,305	순증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	-	2,539	2,539	순증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	-	8,071	8,071	순증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	-	1,714	1,714	순증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	-	2,598	2,598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 1월 21일 출범하여 2022년 예산안을 신규로 편성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II 개별 사업 분석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과지표 재설정 검토 필요

가. 현 황

정부는 투입 위주의 재정운용 방식을 성과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성과계획서·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다양한 성과 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 성과계획서·보고서는 기관의 임무목표와 연계하여 사업별로 성과지표·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 재정사업성과관리 · 평가 체계 〉

사전단계(N-1년)		집행단계(N년)		사후단계(N+1년)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	• 예산배분 · 집행 등 재정 운용	→	• 성과보고서 작성 (성과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 보고) •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

자료: 2022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국가재정법」 제8조제2항[1)]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다음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제31조 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제66조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과계획서·보고서를 기존의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하도록 전환하고 프로그램별로 원칙적으로 결과지표 1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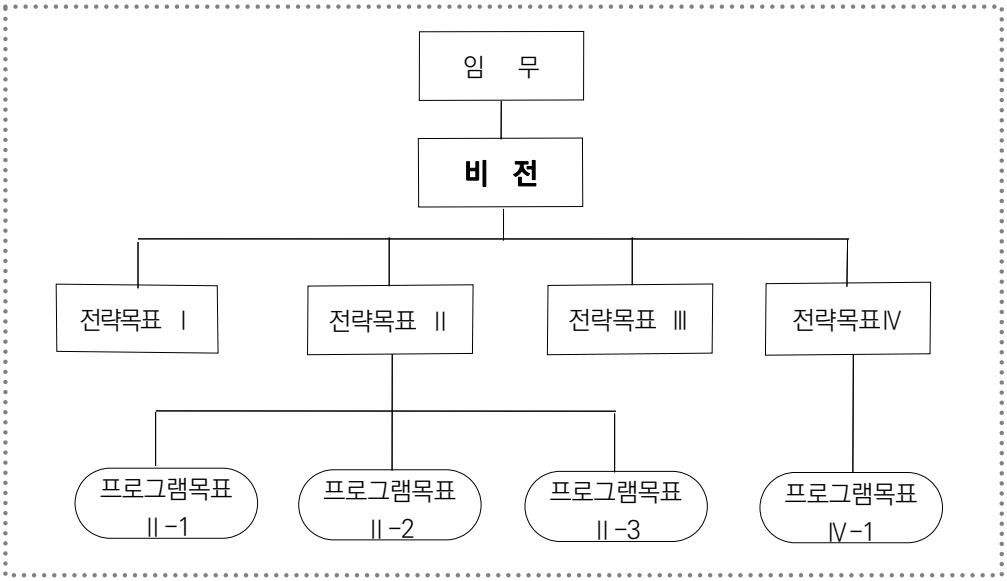

자료: 2022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나. 분석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정한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행 성과지표를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2022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표를 각각 1개씩 설정하고 있는데, 전략목표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

결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한다'이고 프로그램 목표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인권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첨단과학수사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로는 ①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도'와 ②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포렌식 의뢰 고객만족도'를 설정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 분야		정량/정성	성격	
전략목표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인권 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첨단과학수사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							
공수처 활동	①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대응 수사 역량 강화 및 대응 체계 구축도(점)	0.5	일반 재정	31(점)	정성	결과	
	②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포렌식 의뢰 고객만족도(점)	0.5	정보화	65(점)	정성	산출	

자료: 2022년도 성과계획서(공수처)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여야 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 수준의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 및 정량지표'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지표 개념 및 특성]

구 분	개 념	특 성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 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

자료: 2022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음 반복측정 시 동일한 결과	평가자의 주관 반영
사례	- 우량농지조성면적 - 해외건설 수주액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민원인 만족도 -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자료: 2022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그런데 공수처가 설정한 성과지표를 보면,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대응 수사역량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도’와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포렌식 의뢰 고객만족도’ 모두 ‘정량지표’가 아닌 ‘정성지표’이며,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포렌식 의뢰 고객만족도’ 지표는 평가자인 공수처 직원들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대응 수사역량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도’ 지표는 결과지표라고는 하나, 공수처 직원의 교육 이수요건 충족 여부 및 수강인원을 조사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및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①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도(점)	ㅇ 측정산식 : {(교육이수 1회×인원수)+(교육이수 2회×인원수)} - (교육이수 기준) 1일 교육시간 6시간 이상 출석, 교육대상 기간 동안 주 3일 이상 참석	직원 교육 관련 내부 공문, 보고 자료 등
②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의뢰 고객만족도(점)	{(매우 만족 선택 수×100)+(만족 선택 수×75)+(보통 선택 수×50)+(불만족 선택 수×25)+(매우 불만족 선택 수×0)}÷만족도 평가항목 총수	설문 조사 데이터

자료: 2022년도 성과계획서(공수처)

이에 비해 법무부 '검찰활동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를 보면, ①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과 ② '자유형 및 재산형의 집행률'로서,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이라는 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정량지표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법무부 검찰활동 프로그램 성과지표]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 분야		정량/ 정성	성격	
전략목표Ⅰ. 범죄에 대한 신속·공정한 대응과 처리를 통한 법질서 확립							
프로그램목표Ⅰ-1.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							
검찰활동	①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0.5	일반 재정	12.0(%)	정량	산출	
	②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0.5	일반 재정	82.03(%)	정량	결과	

자료: 2022년도 성과계획서(법무부)

따라서 공수처는 현행 성과지표를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로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형사보상금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등

가. 현 황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1)]은 범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직접수사 활동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25억 3,900만원이다.

[2022년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	-	-	2,539	2,539	순증
손실보상금	-	-	-	113	113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공수처

나. 분석의견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수처는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형사보상금(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을 감안할 때 2022년도 집행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므로 예산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손실보상금(310-01목)은 국가가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며, 공수처는 동 목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11-301

형사보상금은 법원의 무죄 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에 근거하여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기소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수사 및 기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인원을 추산하기는 어렵다.

---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 · 국가안보실 · 대통령경호처 ·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 · 부원장 · 감사
   더. 감사원 · 국세청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그런데 2021년 9월말 기준 공수처의 사건접수 및 처리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350건의 접수건수 중 593건(25.2%)을 분석하여 16건을 입건하였으며, 현재까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사건접수 및 처리건수 현황(2021. 9월말 기준)]

(단위: 건)

구 분	접수	분석	처리건수			
			입건	불입건	분석조사 중지	단순 이첩
수리사건	2,350	593	16 (공제13)[1]	269	0	1,472

주: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6조에 따라 사건(공제)번호가 부여된 사건
자료: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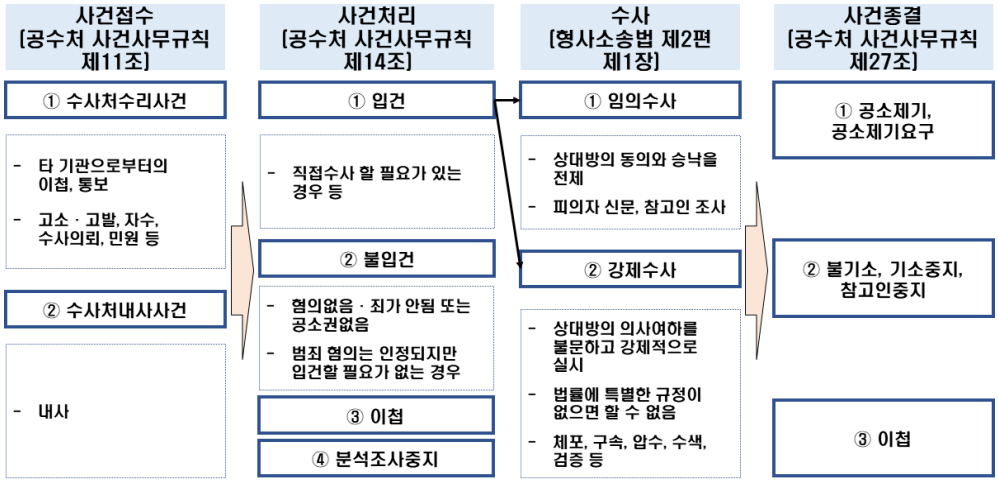

자료: 공수처

또한 공수처는 형사보상금 산출과 관련하여 지급건수를 2건으로, 1인당 지급액을 5,640만원으로 산정하였는데 1인당 지급액에 대해서는 2017년 청주 흥덕경찰서 '박모 경위'의 형사보상금 지급액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박모 경위' 사건을 보더라도 구금일수가 282일에 달하였고 2015년 8월 26일 구금되어 2017년 4월 27일 형사보상금 지급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1년 8개월이 소요[3]된 점을 감안하면 2022년도 형사보상금 집행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3) 충북인뉴스 '억울한 옥살이' 5640만원 보상판결 기사 참조(2017. 4.28)

다만, 형사보상금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인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법무부 형사보상금 1건당 평균 지급액(약 900만원)을 제외한 1억 400만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최근 3년간 법무부 형사보상금(무죄비용 보상 포함) 지급건수 및 지급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피고인보상		피의자보상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당 금액
2018년	5,062	36,704	11	32	5,073	36,736	7.241
2019년	4,232	39,812	25	326	4,257	40,138	9.429
2020년	4,366	41,651	14	256	4,380	41,907	9.568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둘째,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위원 수당 으로 약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개최횟수 등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개최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수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및 훈령·예규 등에 근거하여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수사심의위원회 등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약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다.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 등 구성현황]

(단위: 명)

구 분	위원수	임기	연임횟수	심의 사항
수사심의위원회	10 (외부위원)	2년	2회	· 직접 수사 개시여부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진행 방향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
공소심의위원회	10 (외부위원)	2년	2회	· 공소제기 여부, 공소제기요구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단위: 명)

구 분	위원수	임기	연임횟수	심의 사항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 무죄, 공소기각, 면소판결 등에 대한 상소여부 등
수사자문단	11 (외부위원)	2년	2회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등
영장심의위원회	9 (외부위원)	1년	1회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청구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공보심의협의회	11 (내부 및 외부1))	2년	2회	·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 제21조에 따른 사건의 공보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심의
감찰위원회	5~9 (내부 및 외부)	2년	제한 없음	· 감찰업무의 기본 방향·계획 및 추진 방안 ·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
내부고발자 구조심의위원회	5 (내부 2 및 외부 3)	2년	1회	· 「공수처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주: 1) 위원명단은 비공개임
자료: 공수처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 · 공소심의위원회 · 수사자문단 · 영장심의위원회 · 공보심의협의회는 월 2~3회 정도 개최를 예상하여 연 27회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감찰위원회는 반기별 1회,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및 구조금 심의를 6건 정도로 예상하고 연 6회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공수처는 공수처의 설립취지가 수사 및 기소단계별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등을 활성화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직접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도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 등 관련 예산안 편성내역]

구 분	2022년 예산안
	일반수용비
수사심의위원회	10명*27회*300,000원
공소심의위원회	10명*27회*300,000원
수사자문단	11명*27회*300,000원
영장심의위원회	9명*27회*300,000원
공보심의협의회	11명*27회*300,000원
감찰위원회	7명*2회*300,000원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3명*6회*300,000원
합 계	422,700,000원

자료: 공수처

그러나 공수처는 직제상 정원이 충원될 경우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적정사건의 수를 월 4건, 연 45건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으로, 이와 같은 공수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수사심의위원회 · 공소심의위원회 · 수사자문단 · 영장심의위원회 · 공보심의협의회의 연간 개최횟수를 직접수사 개시 적정사건 수(연 45건)의 60%인 27건으로 산정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개최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자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및 디지털증거 보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가. 현 황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사업[1]은 전자적 증거의 수집, 선별, 압수 등을 위한 현장용 도구를 개발하고,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디지털증거의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기법 연구 및 증거물 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13억 500만원이다.

[2022년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정보화)	-	-	-	1,305	1,305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공수처

나. 분석의견

첫째, 범죄수사 및 형사소송에서 디지털증거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공조를 통하여 과학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디지털증거의 압수를 위한 현장용 도구 개발을 위한 일반연구비(3억 4,500만원)와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9억 4,000만원), 포렌식 수사 소모품비 등(2,000만원)으로, 동 사업에 총 1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

[2022년도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구 분	예산안 편성내역
일반수용비 (210-01)	2,000만원 · 포렌식 수사 소모품비: 1,000만원 · 포렌식 수사관 교육비: 800만원 · 전문가 자문: 200만원
일반연구비 (260-01)	3억 4,500만원 · 전자적 증거 압수를 위한 현장용 도구 개발: 3억 4,500만원
자산취득비 (430-01)	9억 4,000만원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9억 4,000만원 · 소프트웨어: 8억 1,600만원 · 하드웨어: 1억 2,400만원

자료: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2]에 따르면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하며,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보존·분석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6조 및 제8조에서는[3]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공수처장은 국내외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는 자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현황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로부터 2명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보존·분석·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3) 제6조(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디지털 증거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임명)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국내·외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파견받은 것으로 보도되는 등 자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사 및 형사소송에서 디지털증거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으며, 지난 4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력(MOU)를 체결한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공조를 통하여 과학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디지털증거의 원본성 및 무결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조속히 디지털증거의 보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4]에서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의 경우를 보면, 디지털증거의 원본성 및 무결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2012년 디지털수사망(D-NET)을 구축하여 디지털 증거를 통합관리 중으로, 2012년 7월 23일 대검찰청예규인 「전국 디지털 수사망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동 지침에 따라 디지털증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동 규정 제16조에서는 디지털증거의 관리 시 유의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

4)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 등 전자정보의 원본성·무결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에 따르면 현재 전자증거 수집 후 별도의 PC에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동영상 촬영 등 수작업을 통해 증거의 신뢰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어려워 증거의 신뢰성, 무결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2021년 디지털증거의 보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지 못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는 2020년 8월 수립하여 2021년 예비비로 동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디지털증거의 보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은 것은 관련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조속히 디지털증거의 보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및 시스템 구축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발주금액	낙찰액	수주업체	계약기간	납품일	계약방식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150	150	주식회사 케이씨에이	’20.5.7~ ’20.8.5	’20.8.5	제한경쟁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구축	8,747	8,589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21.7.15 ~ ’22.3.12	’22.6.9 (예정)	일반경쟁 (수의)

자료: 공수처

참고로 공수처에 따르면, 디지털증거의 보존·관리시스템 구축에 약 25억 4,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소요기간은 10개월을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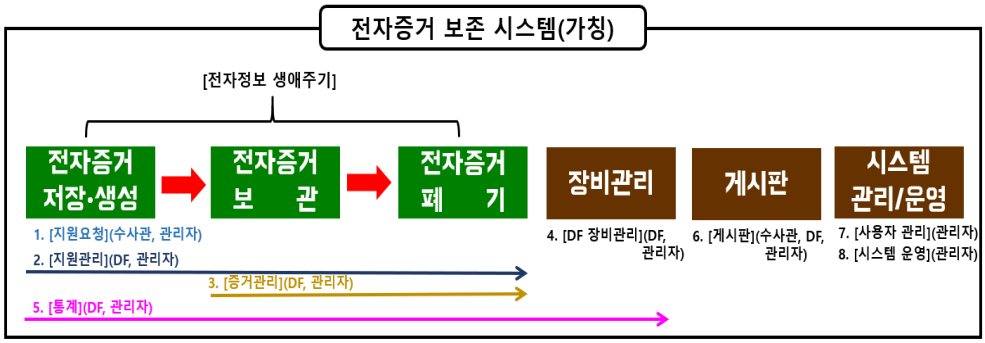
전자증거 보존 시스템(가칭)
[전자정보 생애주기]
전자증거 저장·생성
전자증거 보 관
전자증거 폐 기
장비관리
게시판
시스템 관리/운영
1. [지원요청](수사관, 관리자)
2. [지원관리](DF, 관리자)
3. [증거관리](DF, 관리자)
4. [DF 장비관리](DF, 관리자)
5. [통계](DF, 관리자)
6. [게시판](수사관, DF, 관리자)
7. [사용자 관리](관리자)
8. [시스템 운영](관리자)

자료: 공수처

감사원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감사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7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만원(17.6%) 증가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81	609	609	716	107	17.6

자료: 감사원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1,363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200만원(0.4%) 증가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5,873	135,833	135,833	136,365	532	0.4

자료: 감사원

한편, 감사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smile@assembly.go.kr, 6788-464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2년도 감사원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감사활동경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정비, 국제교류협력강화 등의 사업이 감액된 반면,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이 증액되었다.

2022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극행정 지원 사업에 모범 공직자 해외연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모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해외연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포상 성격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할 때, 포상금 등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감사원의 2022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으로 차세대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소요가 반영되었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억 7,000만원 증액(48.5%)된 90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감사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21		2022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산운영경비(정보화)	6,126	6,126	9,096	2,970	48.5

자료: 감사원

II 개별 사업 분석

1 모범공직자 인센티브 변경 검토 필요

가. 현 황

적극행정 지원 사업[1]은 사전컨설팅, 적극행정면책, 모범사례 발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00만원(5.2%) 증액된 3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적극행정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결산	202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적극행정 지원	-	348	348	366	13	5.2

주: 2021년도 예산부터 감사활동경비에서 분리되어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자료: 감사원

나. 분석의견

모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해외연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포상 성격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smile@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4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4조의2제1항[2]을 근거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사 시 모범 공직자 및 기관부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모범 공직자 및 부서·기관(이하 "모범 공직자 등") 선정대상은 행정능률 향상 또는 예산절감 방안 등을 제안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자로서, 모범 공직자 등으로 선정되면 감사원장 또는 기관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고 해당 모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연찬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4년 간 모범 공직자 등 선정현황을 보면, 2018년 모범 부서·기관 13개, 모범 공직자 5명, 2019년 모범 부서·기관 13개, 모범 공직자 5명, 2020년 모범 부서·기관 15개, 모범 공직자 8명, 2021년 8월 말 기준 모범 부서·기관 7개, 모범 공직자 1명이다.

[최근 4년 간 모범 공직자 등 선정현황]

(단위: 개, 명)

연도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부서·기관	공직자	부서·기관	공직자	부서·기관	공직자	부서·기관	공직자
2018	13	5	4	1	6	2	3	2
2019	13	5	4	4	5	1	4	-
2020	15	8	4	2	5	3	6	3
2021.8.	7	1	3	-	3	4	1	-

자료: 감사원

2018년과 2019년에는 모범 공직자 등에게 감사원장 또는 기관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고 해외연찬을 실시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라 해외연찬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2021년에도 해외연찬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2) 「감사원법」제34조의2(권고 등) 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4년 모범 공직자 인센티브 현황]

연도	모범공직자 인센티브 제공 현황
2018	감사원장 또는 기관장 표창, 모범직원 등 14명 해외연찬
2019	감사원장 또는 기관장 표창, 모범직원 등 13명 해외연찬
2020	감사원장 또는 기관장 표창, 해외연찬 미실시
2021	감사원장 또는 기관장 표창, 해외연찬 미실시

자료: 감사원

이에 따라 2020년 이후로 모범 공직자는 표창 외에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모범 공직자 해외연찬을 위해 편성된 예산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모범 공직자 해외연찬 예산은 2022년도에도 2021년과 동일한 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집행여부가 불확실하다.

[모범 공직자 해외연찬 예산안 현황]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집행액(8월말)	
○ 모범 공직자 해외연찬 87백만원 = 18명 × 4.83백만원	없음	○ 모범 공직자 해외연찬 87백만원 = 18명 × 4.83백만원

자료: 감사원

이처럼 감사원이 모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해외연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해외연수를 비대면 방식으로 상당수 전환하는 추세이고, 개인마다 근무여건이나 각종 사정에 따라 해외연찬에 대한 선호도 또는 참여여부에 차이가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포상 성격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극행정 모범 공직자에 대해 해외연찬이 아닌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 · 총지출

대법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등기특별회계) 및 1개 기금(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9,671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664억원(△14.7%) 감소하였다. 회계 ·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791억원, 등기특별회계 3,054억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826억원이다.

[2022년도 예산안 대법원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719,759	988,194	988,194	784,536	△203,658	△20.6
- 일반회계	400,892	629,402	629,402	479,133	△150,269	△23.9
- 등기특별회계	318,867	358,792	358,792	305,403	△53,389	△14.9
기 금	135,870	145,315	145,315	182,595	37,280	25.7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35,870	145,315	145,315	182,595	37,280	25.7
합 계	855,629	1,133,509	1,133,509	967,131	△166,378	△14.7

주: 1) 추경의 경우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대법원

대법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조 30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29억원(△0.6%) 감소하였다. 회계 ·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7,182억원, 등기특별회계 2,372억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754억원이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0)

[2022년도 예산안 대법원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824,351	1,962,889	1,962,889	1,955,451	△7,438	△0.4
- 일반회계	1,598,604	1,718,024	1,718,024	1,718,235	211	0.0
- 등기특별회계	225,747	244,865	244,865	237,216	△7,649	△3.1
기 금	53,116	80,792	80,792	75,367	△5,425	△6.7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3,116	80,792	80,792	75,367	△5,425	△6.7
합 계	1,877,467	2,043,681	2,043,681	2,030,818	△12,863	△0.6

주: 1) 추경의 경우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대법원

나. 세입 · 세출예산안

대법원 소관 2022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등기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대법원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7,84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037억원(△20.6%)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791억원, 등기특별회계 3,054억원이다.

[2022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00,892	629,402	629,402	479,133	△150,269	△23.9
특별회계	318,867	358,792	358,792	305,403	△53,389	△14.9
합 계	719,759	988,194	988,194	784,536	△203,658	△20.6

주: 1) 추경의 경우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대법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 23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32억원(△2.6%)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7,182억원, 등기특별회계 3,054억원이다.

[2022년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98,604	1,718,024	1,718,024	1,718,235	211	0.0
특별회계	240,970	358,792	358,792	305,403	△53,389	△14.9
합 계	1,839,574	2,076,816	2,076,816	2,023,638	△53,178	△2.6

주: 1) 추경의 경우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다. 기금운용계획안

대법원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만 구성된다.

대법원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826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373억원(25.7%) 증가하였다.

[2022년도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35,870	145,315	145,315	182,595	37,280	25.7

주: 1)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라. 재정구조

2022년도 예산안의 대법원 소관 회계 · 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로 454억원이 전출된다.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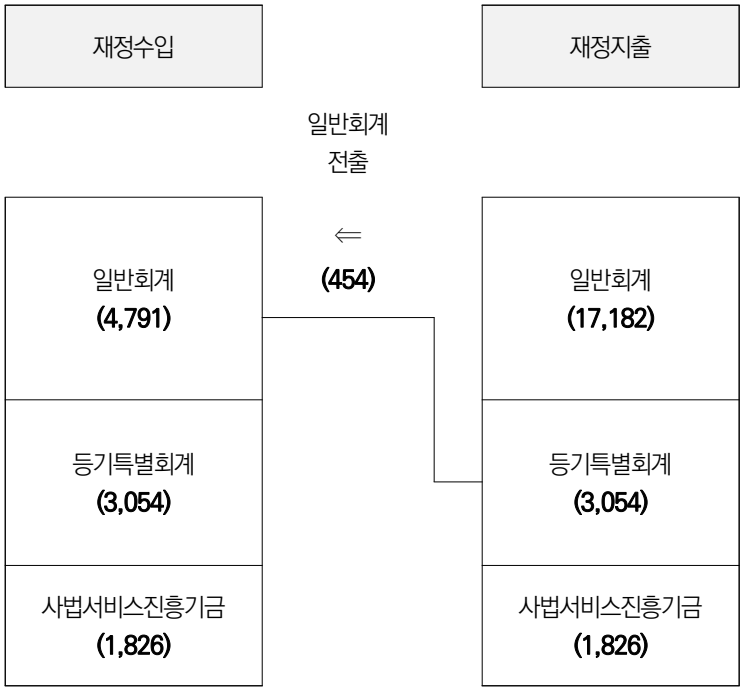

주: 총계기준
자료 : 대법원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2년도 대법원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전년 총지출 대비 129억이 감액된 2조 308억원을 편성하였고, ②「민사소송법」개정에 따라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 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미확정 판결서 공개시스템 개발 관련 예산이 신규 반영(8억원)되었으며, ③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정전담변호사를 확충하여 관련 예산이 확대(2021년 19억원 → 2022년 25억원)되었다.

2022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22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비사업성 지출 비중은 58.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 적극적인 주요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운용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기금 조성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탁금 보관은행의 이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제19조 단서조항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 사업과 가사·소년 법관 등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사업목적, 사업내용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편성의 일관성과 집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성년후견사건 접수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 집행실적 및 절차구조 인용비율은 정체 · 감소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대법원의 2022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293억원 규모이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 중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은 세부사업으로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고유한 제도 하에 기능을 달리하는 다수의 내역사업이 나열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년보호등 지원', '민원서비스 개선', '사법서비스 향상' 등 3개 사업으로 분리 편성되었다.

[대법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개)	소년보호등 지원	6,256
	민원서비스 개선	23,068
합 계		29,324

자료: 대법원

2022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사업 중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이 있다.

①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사업'은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법률문헌 등을 원문 DB로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해 검색·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어 전년 추경예산 대비 1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②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은 형사공탁 특례 신설에 따라 형사공탁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예산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어 전년 추경예산 대비 1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다.

[대법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1[1]		2022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개)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1,515	1,515	2,676	1,161	76.6
사법서비스 진흥기금(1개)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2,791	2,791	4,178	1,387	49.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대법원

II 주요 현안 분석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 관련 분석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공탁법」 제28조(기금의 설치)[1]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이다.

2022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안 규모는 전년대비 372억 8,000만원(25.7%) 증액된 1,825억 9,500만원이다. 주요 수입원은 공탁금 운영을 통한 이익 중 일부를 공탁금 관리 은행으로부터 받는 공탁출연금으로 민간출연금(59-594)에 해당하며, 2022년도 공탁출연금은 전년대비 240억 8,900만원 증액된 1,015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2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총 계	135,870	145,315	145,315	182,595	37,280	25.7
기타경상이전수입	91,654	77,507	77,507	101,596	24,089	31.1
민간출연금	91,449	77,507	77,507	101,596	24,089	31,.1
정부예금회수	43,343	67,448	67,448	49,829	△17,619	△26.1
예탁원금회수	-	-	-	30,000	30,000	순증
기타	873	360	360	31,170	810	225.0

주: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대법원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0)

1) 「공탁법」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022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 계획안 규모는 전년대비 372억 8,000만원(25.7%) 증액된 1,825억 9,500만원이며,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2]과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3]이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4]에서 분리 편성되었다. 주요 지출은 여유자금운용으로 전년대비 427억 500만원이 증액된 772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금 지출 계획안 총계의 42.3%를 차지한다.

[2022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총 계	135,870	145,315	145,315	182,595	37,280	25.7
공탁업무전산화	2,925	2,791	2,791	4,178	1,387	49.7
대국민사법 정보시스템구축	961	10,066	10,066	8,399	△1,667	△16.6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49,186	67,876	67,876	62,741	△5,135	△7.6
사법서비스향상	30,976	46,687	46,687	12,145	△34,542	△74.0
소년보호 등 지원	-	(6,456)	(6,456)	6,256	(△200)	(△3.1)
민원서비스 개선	-	(26,171)	(26,171)	23,068	(△3,103)	(△11.9)
기금운영비	44	59	59	49	△10	△16.9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30,000	30,000	30,000	-	-
여유자금운용	82,754	34,523	34,523	77,228	42,705	123.7

주: 1)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괄호는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에서 2022년부터 분리되는 세부사업의 계획액 기준 값
자료: 대법원

2)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4
3)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5
4)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6

1-1.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적극 추진 필요

가. 현 황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2016년「공탁법」제28조(기금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용되며,「공탁법」제31조(기금의 용도)[5]는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조정제도의 운용,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등을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목적 및 용도]

구 분	내 용
기금목적 (「공탁법」 제28조)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설치
기금용도 (「공탁법」 제31조)	①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②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③ 조정제도의 운용
	④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⑤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⑥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5)「공탁법」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나. 분석의견

2022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비사업성 지출 비중은 58.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 적극적인 주요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운용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공탁출연금[6]이며, 공탁출연금은 공탁금을 보관하는 각 은행이 공탁금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피공탁자 등에게 지급할 이자와 은행의 포괄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이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금에 출연되는 금액이다.[7]

공탁출연금은 동 기금이 설치된 2016년도에 535억 1,700만원이 납부된 것을 시작으로 2021년도에는 839억 7,000만원이 납부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1,015억 9,6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유자금운용 사업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사업과 같은 비사업성 지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14.3%p가 증가한 58.7%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공탁출연금 및 지출 현황: 2016~2022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획)	2022 (계획안)
공탁출연금	53,517	48,440	54,476	84,111	91,499	83,970	101,596
기금 지출액(A)	53,818	54,479	65,121	94,569	135,870	145,315	182,595
비사업성 지출(B)	5,563	10,122	19,646	46,087	82,754	64,523	107,228
비중(B/A)	10.3	18.6	30.2	48.7	60.9	44.4	58.7

주: 1. 공탁출연금은 실제 납부 금액 기준(2016~2021년), 2022년은 계획안 기준
2. 기금 지출액 및 비사업성 지출은 집행액 기준(2016~2020년)
3. 비사업성 지출은 여유자금 운용 사업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사업을 의미
자료: 대법원

6) 공탁출연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민간출연금(59-594) 수입 사업으로 편성된다.
7) 공탁출연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1-2.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정비 필요'에서 서술하였다.

또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 평균잔액을 살펴보면, 연중 운용 평균잔액 기준 2016년도 여유자금 규모는 35억 4,000만원에서 2021년도 863억 5,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9.4%로 나타났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 평균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3,540	7,150	9,900	11,420	32,370	86,350	89.4

자료: 대법원

이와 같이 2022년도 계획안 비사업성 지출의 비중이 전년대비 늘어난 것은 2022년도 공탁출연금 계획 규모가 2021년도 수납 규모 대비 21.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사업성 지출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8] 특히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 등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및 재정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주된 감액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세부사업은 편성되지 않았다.[9]

8) 반면 여유자금운용 사업의 경우 2022년도 계획안 규모는 772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7억 500만원(123.7%) 증액되었다.

[2022년도 여유자금운용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여유자금운용	82,754	34,523	34,523	77,228	42,705	123.7

주: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대법원

9)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법원 사업은 재판 및 각종 사건 추이에 따라 증감 변동하는 관련 업무 처리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러한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예산의 대규모 증액이나 신규사업 발굴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2022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 수정(A)	2022 계획안(B)	증감		감액 사유
			B-A	(B-A)/A	
대국민사법정보 시스템구축(1331-301)	10,066	8,399	△1,667	△16.6	총사업비의 연차별 안분에 따른 자연 감소
소년보호 등 지원 (1161-304)	6,456[1)]	6,256	△200	△3.1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및 재정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26,171[1)]	23,068	△3,103	△11.8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및 재정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주: 1)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과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은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에서 분리 편성된 것으로, 2021년도 수정 계획액은 기존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에서 2022년도 사업으로 분리 편성된 내역사업 등의 규모를 합산한 것임

자료: 대법원

이와 같은 비사업성 지출 비중의 증가와 관련하여, 「2019 기금존치평가보고서」는 동 기금은 자체수입이 필수지출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므로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신설기금이라 초과수입을 통한 과도한 여유자금운용 및 기금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는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0)]

그러나,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현재 설치 이후 6년 간 운용되면서 신설기금의 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기금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 운용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금 지출액의 약 60%를 여유자금운용 사업 등에 편성하고 있는 것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하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여유자금의 과도한 운용은 기회비용을 유발하여 국가재정 운용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기획재정부, 「2019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19.5., p.223.

1-2.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정비 필요

가. 현 황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공탁출연금은 공탁금 운영을 통한 이익 중 일부를 공탁금 관리 은행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으로 민간출연금(59-594)에 해당하며, 2016년도 535억 1,700만원이 출연된 것을 시작으로 2021년도 839억 7,000만원이 출연되었고 2022년도 1,015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출연금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공탁출연금 현황: 2016~2022년]

(단위: 백만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안)	연평균 증가율
53,517	48,440	54,476	84,111	91,499	83,970	101,596	11.3

주: 공탁출연금은 실제 납부 금액 기준(2016~2021년), 2022년은 계획안 기준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기금 조성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탁금 보관은행의 이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 단서조항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탁출연금의 확정은 「공탁법」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11]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동법 제19조(출연금)[12]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

---

11) 「공탁법」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확정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생략〉

12) 「공탁법」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다.

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13]는 공탁금을 보관하는 각 은행이 공탁금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피공탁자 등에게 지급할 이자와 은행의 포괄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이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탁출연금 산정 방식]

공탁출연금 = 공탁금 운용수익금[1] − 포괄이윤[2] − 이자비용[3]

1) 공탁금 운용수익금 = 은행별 공탁금 평균잔액 × 은행별 자금운용수익률
2) 포괄이윤 등 = 은행별 공탁금 평균잔액 × 은행별 순이자마진율
3) 이자율 = 0.1%(2020.7.1.~), 0.35%(2018.7.1.~2020.7.1.)
단, 공탁출연금 중 당해 연도의 위원회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

자료: 대법원

공탁금관리위원회는 보관은행별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다만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관은행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연도의 보관은행별 출연금액의 규모는 전년도 출연금액의 80%~120% 범위 내에 위치하게 된다.

2021년도 공탁출연금은 보관은행별로 운용수익(A)에서 포괄이윤(B)과 이자비용(C)을 제하고 남은 금액(A-B-C)으로 결정되었고, 다만 동 금액이 전년도 출연금의 80% 이하인 경우 출연금 하한(전년도 출연금×80%)이 적용되고 전년도 출연금의 120% 이상인 경우 출연금 상한(전년도 출연금×120%)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은 출연금 하한 값이,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은 출연금 상한 값이 최종 출연금으

13)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이하 생략〉

로 결정되었다.

[2021년도 보관은행별 공탁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보관은행	운용수익 (A)	포괄이윤 (B)	이자비용 (C)	출연금 (A-B-C)	전년도 출연금	최종 출연금
신한	176,931	98,295	15,006	63,630	70,939	63,630
제일	11,263	6,240	1,128	3,894	5,016	4,013
우리	8,947	4,703	778	3,466	3,218	3,466
농협	12,711	7,711	1,018	3,982	2,806	3,367
하나	4,236	2,150	357	1,729	1,882	1,729
광주	5,137	3,542	355	1,240	1,236	1,240
대구	8,095	5,066	638	2,390	2,326	2,390
부산	5,061	3,182	362	1,516	1,519	1,516
경남	7,719	4,858	577	2,284	2,245	2,284
전북	1,742	1,181	102	459	262	314
합계	241,842	136,928	20,321	84,590	91,449	83,949

주: 1. 제일은행의 최종출연금은 전년도 출연금의 80%,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의 최종출연금은 전년도 출연금의 120% 수준으로 결정
2. 최종출연금에서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운영비가 제외되고 법인세 감면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최종출연금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공탁출연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대법원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2022년도 보관은행별 공탁출연금을 산출해보면, 2022년도 공탁출연금의 상한 값은 1,007억 3,900만원이며, 2022년도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운영비로 5,000만원을 제외할 계획이라는 점을 반영하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출연되는 공탁출연금의 최대 규모는 1,006억 8,900만원이다. 그러나 2022년도 공탁출연금 계획액은 1,015억 9,600만원으로 최대 규모에서 9억 700만원을 초과하여 편성되었으며, 2022년도 수납액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도 보관은행별 공탁출연금 예상액 현황]

(단위: 백만원, %)

보관은행	전년도 출연금	2022년도 출연금		보관은행	전년도 출연금	2022년도 출연금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신한	63,630	76,356	50,904	광주	1,240	1,488	992
제일	4,013	4,816	3,210	대구	2,390	2,868	1,912
우리	3,466	4,159	2,773	부산	1,516	1,819	1,213
농협	3,367	4,040	2,694	경남	2,284	2,741	1,827
하나	1,729	2,075	1,383	전북	314	377	251
합계	83,949	100,739	67,159	-			

주: 합계는 10개 보관은행의 합계를 의미
자료: 대법원

이와 같은 공탁출연금의 초과 편성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공탁출연금의 실질적인 문제는「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제19조제1항 단서조항[14]에서 발생한다. 본래 동 규칙은 기금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탁출연금의 출연 범위에 제한을 둠으로써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기준금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0년 3월에 신설된 규정이다.

그러나 공탁출연금운용수익과 포괄이윤, 이자비용은 각 은행이 이사회결의를 통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값으로, 동 규칙의 단서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관은행이 포괄이윤 이상의 수익을 수취하거나, 포괄이윤에 못 미치는 이윤을 수취하도록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관 은행이 공탁금 운용을 통해 포괄이윤 이상의 수익을 수취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15], 반면에 보관은행이 공탁금 운용에 대한 정당한 이윤인 포괄이윤에 못 미치는 이윤을 수취하는 것은 보관은행에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제19조제1항 단서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4) 공탁금 보관은행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15) 보관은행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탁금 이자만을 부담하고 상당한 공탁금 운용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따라 2007년「공탁법」개정을 통해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받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출연금은 자금운용수익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자금운용수익률은 각 은행들의 경영지표에 따른 영업적인 이윤 창출 부분이므로 각 은행들의 노력이 포함된 결과라는 입장이다.[16] 공탁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좋은 성과가 있는 경우 포괄이윤보다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고,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포괄이윤보다 적은 이윤을 얻는 것은 낮은 성과에 대한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출연금에 제한이 가해지는 범위를 전년도 출연금 규모의 80% 이하, 120% 이상으로 특정한 것과 관련하여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출연금 구간별로 이와 같은 성과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규칙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6) 공탁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좋은 성과가 있는 경우 포괄이윤보다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고,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포괄이윤보다 적은 이윤을 얻는 것은 낮은 성과에 대한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법관 등 트라우마 치유 사업

가. 현 황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법관과 증인지원관, 법원조사관이 호소하는 대리외상의 치유를 지원하고 형사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정신건강 증진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1)]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0,253	11,463	11,463	12,111	648	5.7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	96	200	200	200	0	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대법원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사업은 가사비송절차 활성화, 이혼 전 상담 지원, 성년후견제도 지원, 치유적 사법제도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2)]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1억 7,500만원이 감액된 39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사·소년 법관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심신 회복, 심리적 소진 예방 및 효율적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142-401
2)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6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1:1 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지원하는 '가사·소년 법관 및 조사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내내역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2022년도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결산	2021[1]		2022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법서비스 향상	30,976	46,687	46,687	12,145	△34,542	△74.0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6,326	9,127	9,127	3,952	△5,175	△56.7

주: 1)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첫째,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 사업과 가사·소년 법관 등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사업목적, 사업내용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편성의 일관성과 집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성폭력, 아동학대 등 대인폭력 분야를 다루는 법관, 증인지원관, 법원조사관 등의 직무관련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형사재판부 법관, 증인지원관, 법원조사관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개인상담, 집중치유 및 집중상담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가사·소년 법관 등 트라우마 지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하 '가사·소년 법관 등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가사 사건의 심각화, 민원의 극심화 속에서 가사 분쟁에 개입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법관과 가사조사관의 심신을 회복,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가사법관, 가사조사관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이고, 가사·소년 법관 등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이며, 두 사업은 현재 별도의 재원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법관 등 트라우마 치유사업 내용]

구 분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 사업	가사·소년 법관 등 트라우마 치유 사업
사업목적	성폭력, 아동학대 등 대인폭력 분야를 다루는 법관, 증인지원관, 법원조사관 등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	가사사건의 심각화, 민원의 극심화 속에서 가사 분쟁에 개입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법관, 가사조사관의 심신을 회복하고,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
사업대상	형사재판부 법관, 증인지원관, 법원조사관	가사 법관, 가사조사관
사업내용	① 개인상담: 심리 상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바쁜 업무로 일정관리가 어려운 법관 등을 위해 상담 희망 시간을 정하고 진행 ② 집단상담: 동일법원 내 법관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예: 명사특강, 캘리그라피 등) ③ 집중치유: 권역별로 각 대상자 그룹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 시행(예: 숲치유, 템플스테이 등)	① 개인상담: 참석자 개인을 대상으로 상담주제, 원하는 시간, 상담자 등을 매칭하여 1:1 대면상담 진행 ② 집단상담: 법원 별로 법관과 가사조사관이 희망하는 주제를 개설하여 집단상담 또는 집단 프로그램 진행
재원조달	일반회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자료: 대법원

한편, 두 사업을 비교하여 보면 사업대상자가 속하는 분야가 각각 형사사건, 가사사건으로 다르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사업의 목적이 법관 등의 대리외상이나 스트레스 등을 치유하고 정신건강을 회복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 사업대상을 법관, 법원조사관 등으로 하고 있다는 점, 사업내용이 개인상담·집단상담·집중치유(집단프로그램)라는 점에서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목적 및 대상, 내용 등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중복 집행을 방지하며 사업 편성의 일관성 유지와 집행의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 사업 및 가사·소년법관 등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둘째,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법관 등의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상담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관 등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 사업에 대하여 매년 1억 1,250만원의 개인상담 예산을 계획·편성하고 있다. 이는 50명이 최대 15회씩의 개인상담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계획·편성한 것이나, 2020년과 2021년(8월 기준)의 경우 1인당 평균 상담 횟수는 각각 9.3회, 2.5회로, 계획한 상담 가능 횟수인 15회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 사업 계획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계획		집행	
		산출근거	예산	실적	집행액
2020	개인상담	50명×15회×150	112,500	상담 인원 36명 상담 횟수 336회	58,317
	집중치유	8그룹×2회×10시간×400	64,000	개인치유형 22명 22회 그룹치유형 29명 5회	29,838
	집단상담	14회×4시간×400	22,400	51명 10회	7,700
	합계		198,900		95,855
2021 (8월)	개인상담	50명×15회×150	112,500	상담 인원 42명 상담 횟수 106회	14,840
	집중치유	8그룹×2회×10시간×400	64,000	산림치유형 7명 2회	3,700
	집단상담	14회×2시간×400	11,200	10명 2회	2,000
	합계		187,700		20,540
2022	개인상담	50명×15회×150	112,500	-	
	집중치유	8그룹×2회×10시간×400	64,000	-	
	집단상담	14회×2시간×400	11,200	-	
	합계		187,700	-	

자료: 대법원

구체적인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도의 집행률은 48.2%, 2021년 8월 기준 집행률은 10.9%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2020년도의 경우 동 프로그램이 하반기에 처음 시행되면서 사업이 전국 법원에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20년과 2021년은 형사재판부의 업무 부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시 등으로 그룹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룹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인상담을 기준으로 산정한 집행률도 2020년, 2021년(8월 기준) 각각 51.8%, 13.2%로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룹 프로그램 외의 개인상담 실적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은 형사재판부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법관 등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방문상담, 전화상담 등의 다양한 방식의 상담을 고려 필요가 있으며, 소방청의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 등의 우수한 사례[3]를 참고하여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법관 등의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소방청의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은 정신 건강 전문가가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여 예방교육, 심리장애 진단 및 1:1 개인상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화상상담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다.

2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의 적극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사법서비스향상 사업[1]은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45억 4,200만원이 감액된 12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사업에 39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결산	2021[1]		2022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법서비스 향상	30,976	46,687	46,687	12,145	△34,542	△74.0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6,326	9,127	9,127	3,952	△5,175	△56.7

주: 1)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성년후견사건 접수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 집행실적 및 절차구조 인용비율은 정체 · 감소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보호가 필요한 성년자의 인간의 존엄에 비추어 그의 의사와 능력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고 효율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161-306

대법원은 성년후견사건의 절차구조[2]를 통해 성년후견사건의 절차비용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시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독거노인 등 자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후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절차의 구조)[3]는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이 그 구체적인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 활성화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2,200만원(집행률 44.0%)부터 2019년 900만원(20.0%), 2020년 1,400만원(31.1%) 등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로 집행된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50	45	45	45	45
집행액	22	20	30	9	14
집행률	44.0	44.4	66.7	20.0	31.1

자료: 대법원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성년후견사건 접수건수는 2016년 3,702건에서 2020년도의 경우 8,17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절차구조 건수는 2016년 40건에서 2020년 19건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절차구조 인용비율도 같이 감소하고 있다.

---

2) 후견적 기능 강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성년후견 등 가사비송 절차구조 활성화 사업은 ①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 활성화와 ②가사비송사건 절차구조 활성화로 구성된다.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 활성화에 4,500만원, 가사비송사건 절차구조 활성화에 2,700만원이 편성되어, 동 내내역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7,200만원이다.

3)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절차의 구조)
①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절차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8월)
성년후견사건 접수건수	3,702	4,546	5,910	6,964	8,177	5,804
절차구조 건수	40	32	31	28	19	15
절차구조 인용비율	1.08	0.70	0.52	0.40	0.23	0.26

주: 2021년도 성년후견사건 접수건수를 연말기준으로 환산하면 8,706건임
자료: 대법원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당사자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절차구조 유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년후견사건 접수건수가 증가함에 반해 신청에 의한 절차구조 건수가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8월)
성년후견사건 접수건수(A)		3,702	4,546	5,910	6,964	8,177	5,804
절차구조 신청	신청건수	16	15	11	17	15	8
	인용건수(B)	12	11	7	12	9	5
직권에 의한 절차구조(C)		28	21	24	16	10	10
절차구조 건수(B+C)		40	32	31	28	19	15

자료: 대법원

한편, 대법원의 직권에 의한 절차구조 역시 2016년 28건에서 2020년 1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과 2022년도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 예산안 편성 시 절차구조 인용 추정비율을 0.183%로 2021년의 0.23%에 비해 낮게 예측하고 있다는 점[4]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 의지도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대법원은 2022년도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 활성화 예산을 4,500만원으로 편성하면서 2022년도 예상 후견사건수 15,473건을 기준으로 절차구조 인용 추정비율 0.183%를 적용한 후 평균 정신감정비용 및 변호사 보수 비용 합산액 16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종합하면, 성년후견사건의 절차구조는 성년후견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대법원은 적정한 예상 후견사건수를 반영하면서, 직권을 통한 적극적인 절차구조 수행, 구조요건 완화, 절차구조의 적극적인 홍보 등과 같은 절차구조 인용비율을 제고하는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 전체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재판소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헌법재판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4억 8,0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억 3,900만원(1,070.7%) 증가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0[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75	41	41	480	439	1,070.7

주: 1) 추경의 경우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532억 9,3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억 9,100만원(1.3%) 증가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9,229	52,602	52,602	53,293	691	1.3

주: 1) 추경의 경우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한편, 헌법재판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0)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2년도 헌법재판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화장실 노후시설 등 업무 인프라 개선 예산과 ② 지능형 헌법재판서비스 구축 2단계 사업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정보화 예산을 반영하였다.

2022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소관 미제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심판사건 처리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운영 조정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헌법재판소의 2022년도 신규사업 및 2021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헌법재판소 소관 심판사건 처리지연 해소를 위한 인력운영 조정 검토 필요

가. 현 황

재판활동운영지원[1]은 원활한 재판 활동 수행에 기여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판부, 연구부 등의 연구·조사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며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300만원이 증액된 6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결산	2021[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판활동운영지원	530	586	586	669	83	14.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헌법재판소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031-301

나. 분석의견

헌법재판소 소관 미제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심판사건 처리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운영 조정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대한민국헌법」제111조제1항[2)]에 따라 ① 위헌법률심판, ② 탄핵심판, ③ 정당해산심판, ④ 권한쟁의심판, ⑤ 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며,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다만,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2021년도 심판사건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한 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은 16.6일로 2016년 이후 매년 20일 이하로 비슷한 수준이며, 전원재판부 처리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은 645.6일로 2016년의 463.4일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전원재판부 처리사건의 경우,「헌법재판소법」제38조[3)]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2021년에 처리된 건들의 경우 평균 약 3.6배의 처리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 중 법정기한을 준수한 건수 비중은 8.7%로 심판사건의 처리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3)「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도별 심판사건 처리기간 현황]

(단위: 건, 일, %)

연 도	지정재판부 각하사건		전원재판부 처리사건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평균 처리기간
			전체	법정기한 준수 건수[1](비중)	
2016	1,342	16.4	573	102 (17.8)	463.4
2017	2,031	15.8	369	73 (19.8)	385.8
2018	1,796	19.0	601	100 (16.6)	609.3
2019	2,018	18.5	455	79 (17.4)	521.9
2020	2,467	16.5	521	51 (9.8)	640.8
2021.8.	1,407	16.6	332	29 (8.7)	645.6

주: 1) 법정기한 준수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한 법정기한인 180일을 준수한 건수를 의미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심판사건의 처리지연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헌법재판판례 및 입법례, 국내외의 연구자료 수집·분석, 관련 기관의 의견 취합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신중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처리한 심판사건 건수는 2016년 1,976건을 시작으로 2017년 2,425건, 2018년 2,447건, 2019년 2,519건, 2020년 3,042건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심판회부되어 전원재판부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 수가 2016년 531건에서 2020년 6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심판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연 도	신규접수	처리 사건(A)[1]	취하 (B)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전원재판부 처리사건(D)
				각하(C)	심판회부	합계	
2016	1,951	1,976	61	1,342	531	1,873	573
2017	2,626	2,425	25	2,031	565	2,596	369
2018	2,427	2,447	50	1,796	570	2,366	601
2019	2,730	2,519	46	2,018	603	2,621	455
2020	3,241	3,042	54	2,467	692	3,159	521
2021.8.	1,866	1,779	42	1,407	476	1,883	332

주: 1) 처리사건은 전년도에 처리되지 않은 미제사건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처리한 사건의 수를 말함 (A=B+C+D)

자료: 헌법재판소

이에 따라 전원재판부 소관 사건 중 미제 사건은 2016년 644건에서 2020년 1,187건으로 연평균 16.5%의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원재판부에서 처리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 누적되는 경우 전원재판부 소관 사건 중 장기 미제사건의 비중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원재판부 처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의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제사건의 적극적 처리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재판부 소관 사건 중 미제 사건 추이]

(단위: 건)

연 도	전체 미처리 사건	180일 이내	미제사건		장기 미제사건			
			180일 경과 1년 이내	1년 경과 2년 이내	2년 경과 3년 이내	3년 경과 5년 이내	5년 경과 7년 이내	7년 경과 10년 이내
2016	644	230	178	147	49	37	3	-
2017	854	271	197	225	81	54	26	-
2018	825	261	207	231	86	33	7	-
2019	1,006	299	259	258	108	66	15	1
2020	1,187	314	332	340	132	54	10	5
2021	1,304	301	336	393	183	77	9	5

주: 2016~2020년도의 경우 각 연도 말 기준, 2021년도의 경우 8월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한편, 헌법연구관(보)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4]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조사하는 직으로, 전속부 또는 공동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부 소속 헌법연구관(보)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헌법연구관(보)로 나뉜다.

전속부의 경우 재판관 1인당 헌법연구관 4인이 배속되어 헌마·헌바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심사 및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 중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선례가 있는 사건을 담당하고, 공동부의 경우 3개의 부(자유권부·재산권부·사회권부)에 각각 10~15명의 헌법연구관이 배치되어 헌가·헌나·헌다·헌라 사건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 중 선례가 없고 복잡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요하는 사건 등을 담당하며, 헌법재판연구원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을 연구하고, 공무원·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 교육을 담당한다.

---

4)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이하 생략〉

[헌법연구관(보)의 정원 및 현원 현황(2021년 8월말 기준)]

구 분			헌법 연구관(보)		파견 법관	파견 검사	담당 업무
			정원	현원			
헌법 재판소 연구부	수석부장연구관		58	1	-	-	연구부 총괄
	선임부장연구관			1	-	-	
	전속부	1부		20	7	3	재판관에 배속되어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2부					
		3부					
	공동부	자유권부		33	2	1	재판관에 배속되지 않고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재산권부					
		사회권부					
헌법재판연구원			9	5	-	-	중장기적 연구, 소속 직원 교육
합계			67	60	9	4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의 연도별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2020년 동안 헌법재판소 연구부의 공동부 소속 헌법연구관(보)는 연평균 7.5% 증가하였는데, 동기간 전원재판부 소관의 미제사건은 연평균 16.5%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 연구부의 공동부 소속 헌법연구관(보)의 업무부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헌법연구관(보)의 정·현원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헌법재판소 연구부	전속부	49	19	51	19	51	19	54	20	57	20	58	20
	공동부		24		24		26		29		32		33
	기타		2		2		2		1		2		2
헌법재판연구원[1]		9	6	9	7	9	6	9	5	9	5	9	5
합계		58	51	60	52	60	53	63	55	66	59	67	60

주: 1) 특정직(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임
자료: 헌법재판소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조직진단

등을 활용하여 헌법연구관(보)의 정원 확대를 목표로 기획재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중단기적으로는 심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헌법연구관[5]의 정원 조정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와 선례가 있는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전속부 소속의 헌법연구관(보)을 공동부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공동부 소속 헌법연구관(보)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구제에는 재판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재판의 신속성도 영향을 미치며, 심판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재판청구권의 하나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인력운용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동 직위는 헌법연구관(특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이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1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15-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1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506-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